현안분석 2015-08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연구

김 명 아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현안분석 2015-08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연구

김 명 아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Regulations for Promotion of Fintech Industry

연구자 : 김명아(부연구위원)
Kim, Myoung-Ah

2015. 11. 30.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 약 문

Ⅰ. 배경 및 목적

□ 기존의 핀테크 관련 법제도는 새로운 기술들이 융합된 핀테크산업 및 핀테크회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엄격한 금융규제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온 바 있음

○ 일례로 P2P 자금중개회사나 소액금융회사의 경우, 국내에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대부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앞으로 그 발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는 핀테크산업의 경우, 기존의 금융 관련 규제 및 입법 체계는 핀테크산업의 발전을 막는 요소가 되기도 함

□ 현실화되고 있는 다양한 핀테크 기술이 현재의 규제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고, 핀테크 관련 신기술과 금융혁신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핀테크 유형별 분석을 통하여 관련 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의 핀테크 관련 규제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에 대한 정책과 법제적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핀테크는 금융서비스를 IT기술과 접목하여 새로운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이며, 핀테크의 정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의 범위가 확정됨

○ 핀테크산업은 초기의 온라인금융에서 나아가 인터넷전문은행, 크라우드펀딩회사, P2P 자금중개회사, 소액금융회사, 빅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

○ 핀테크 업무 범위에 따라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제가 다양하게 연계되어 있음

□ 우리나라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개선 방안을 외국의 핀테크 발전 현황과 관련 규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살펴봄

○ 미국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핀테크분야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뉴욕금융중심가에서는 핀테크 혁신과 투자 확대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영국의 경우 런던 동쪽에 테크시티를 조성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대형 은행 중심의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을 시작으로 금융혁신 정책을 빠른 속도로 수행하고 있으며,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정부는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15년 1월 27일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을 통하여 기존의 금융업 관련 법제를 유지하면서도 핀테크산업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함

○ 금융위원회는 기술중립성 원칙을 기반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다양한 보안·인증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서, 향후 관련 핀테크 기술의 발전이 예상됨

○ 2015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지분 보유한도와 법정 최저자본금 관련 기준을 완화하여 일반은행의 영업범위와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함

○ 기존의 금융업 관련 법제를 유지하면서도 현행 핀테크 관련 규제 및 법제에 대하여서는 전지적 사전규제 방식에서 원칙중심의 중간관리·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함

□ 국내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정부가 마련한 핀테크 육성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규제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시범인가 및 시범운영을 통하여 인가기준과 영업범위에 대한 산·관·학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 적정성에 관한 논의를 지속해 가야할 것임

○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에는 ‘온라인소액중개업’자와 ‘온라인소액투자자’에 관한 법제화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내지 P2P대출이나 소액금융중개의 경우에는 별도의 관련 법제를 마련함으로써 규제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임

○ 외환송금과 관련하여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액외환이체업’ 등록제도를 통하여 핀테크기술에 기반한 업체들의 활발한 참여가 가능할 것임

○ 비대면 금융거래 실명확인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보안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핀테크업체들에게도 금융거래사고방지체계(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를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예금자 및 핀테크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과 가상화폐의 현금화 등에 대한 규제범위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으며, 핀테크 관련 금융분쟁해결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할 것임

Ⅲ. 기대효과

□ 핀테크산업의 활성화는 E-Commerce 및 금융투자 원활화를 통한 경제발전 촉진과 투자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이러한 핀테크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입법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주제어 : 핀테크, 규제개선, 인터넷전문은행, 기술중립성, 보안기술, 금융소비자 보호

Abstract

Ⅰ. Background and Purpose

□ A current Fintech-related legal system has taken a rigorous approach to financial regulation as it used to be, not reflecting the specificities of Fintech Industry and its Companies with cutting-edge technologies.

○ The domestic P2P lending companies, as an example, are regarded as lender, subject to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ETC.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nd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 With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Fintech industries are expected to grow at an unprecedented rate. However, contrary to rapid development, existing financial regulatory and legislative framework are likely to be a factor preventing the growth of Fintech Industry.

□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wise solution to pursue a harmony between a variety of high-tech technologies related with Fin-tech and their supportive financial regulations instead of being in conflict.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evant legal status by analyzing various forms of Fintech as well as to find out

appropriate policy for regulatory improvements and legislativ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Fintech Industry by comparing other nations' regulatory cases with domestic ones.

Ⅱ. Main Contents

□ Fintechs in large part acts as a new form entities by combining financial services and IT technology, and range of regulations applied depends on how Fintech is defined.

○ Fintech industry is rapidly evolving from the early days of the online banking to Internet specialized bank, crowdfunding company, P2P money lending firms, microfinance companies, big data-based financial services company.

□ Several solutions for Regulatory improvements required for the activation of domestic Fintech industry are mentioned by studying global Fintechs and their related regulations.

○ Fintechs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are focused mainly on Silicon Valley and New York financial center is leading innovation and investment.

○ In the United Kingdom, while supporting a policy to create a Tech City in east London, it is trying to promote fintech industry mainl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large central banks.

○ In Japan, since the Internet specialized bank has been introduced,

it performs financial innovation policy at a faster pace and Fintech industry based on IT technology is growing rapidly.

□ Korean government has made an effort to foster Fintech industr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policies. As a big step toward Fintech activation, it suggested deregulatory measures to effectively manage Fintech industry while keeping their existing banking-related legislation through ‘IT · Financial Fusion support measures’ January 27, 2015.

○ FSC has a plan to introduce various methods of security, authentication, and verification in the form of non-face-to-face based on the principle of technology neutrality, thus contributing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Fintech related technology.

○ In 18 June 2015, FSC agreed to introduce Internet specialized bank who can work with the same operating range of traditional banks to help ease the statutory minimum capital standards and stake limit held by banks on a trial basis.

□ To activate the domestic Fintech industry, it is needed to maintenance Fintech-related institutions as a whole and continue to improve the regulatory barriers.

○ Continuous monitoring on the matter such as operating range and the licensing criteria by various entities including business, government, academy, as well as discussion on the adequacy of regulations is required through the demonstration and pilot operation of the Internet specialized bank.

○ In the case of equity-type crowdfunding, legislation has been made relating to ‘online small brokerage’s party’ and the ‘Online retail investors’, but ongoing regulatory improvement is needed. Meanwhile, in case of loan type crowdfunding or P2P lending and microfinance intermediaries, it will be needed to replace the control system by providing a separate related laws.

○ It is necessary for the user protection to set the regulatory scope of liquidating virtual money clearly and provide protective measures for investor and the Internet specialized bank’s depositors. Also, Fintech-related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system should be made as soon as possible.

Ⅲ. Expected Effect

□ Activation of the Fintech industr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and investment increasing effect through the E-Commerce and financial investment facilitation. This study is also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composition of the legislative environment regarding future Fintech industry development and activation.

Key Words : Fintech, Improving the Regulatory, Internet only Bank, Technology Neutrality, Security Certification Technology,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7

제 1 장 서 론 ····· 13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3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4

제 2 장 핀테크 발전 현황과 관련 법제 ····· 17

제 1 절 국내 핀테크 발전 현황 ····· 17

1. 핀테크의 정의와 유형 ····· 17

2. 국내 핀테크산업 발전 현황 ····· 19

제 2 절 핀테크 관련 법제와 규제 요소 ····· 38

1. 핀테크 유형별 적용 법제 ····· 38

2. 현행 법제에서의 규제적 요소 ····· 44

제 3 장 해외 사례 ····· 49

제 1 절 미 국 ····· 49

1. 발전현황 ····· 49

2. 관련 규제 ····· 50

3.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51

제 2 절 영 국 ····· 52
1. 발전현황 ····· 52
2. 관련 규제 ····· 54
3.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56

제 3 절 일 본 ····· 57
1. 발전현황 ····· 57
2. 관련 규제 ····· 58
3.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59

제 4 장 국내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 61
제 1 절 국내 핀테크 육성정책과 시사점 ····· 61
1. 금융규제개혁과 IT · 금융융합 정책의 기본방향 ····· 61
2. 오픈플랫폼 ····· 65
3. 인터넷전문은행 ····· 66
4. 해외송금과 소액외환이체업 ····· 75

제 2 절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 ····· 78
1. 핀테크 규제 개선 ····· 78
2.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 79
3. 온라인 금융과 전자상거래의 발전 ····· 83
4. 금융소비자 보호 ····· 86

제 5 장 결 론 ····· 91

참 고 문 헌 ····· 9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근래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핀테크산업은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앞으로 그 발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크라우드펀딩회사, P2P 자금중개회사, 소액금융회사 등의 핀테크 관련 업체에 대하여 금융법제에 따른 엄격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최근 현행 금융법제를 핀테크산업이나 핀테크업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핀테크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의견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1)]

이에 정부는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2)]에서 핀테크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으로 하여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2015년 6월 18일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2016년 상반기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하여 제도를 운용하기로 한 바 있다. 즉, 은행지분 보유한도와 법정 최저자본금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일반은행의 영업범위와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하여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3)]

이 밖에도 정부는 현실화되고 있는 다양한 핀테크 기술이 금융혁신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금융

1) 안상현, "핀테크 싹 틔우려면 3중 규제 풀어야", BLOTER, 2015.03.11., (http://www.bloter.net/archives/222541 2015.11.30. 검색), 한국경제연구원, "美・日,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금산분리 규제 폐지", 2015.02.23., 2면

2) 기획재정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 2014.03.27., 23면, 28면

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IT・금융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2015.06.18., 11-16면

데이터분석을 통하여 신용평가나 금융상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수립 중이다.[4)]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P2P 자금중개회사나 소액금융회사의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여전히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5)] 또한, 크라우드펀딩회사의 경우 지분투자형의 경우에는 『금융투자 및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일정부분 규제가 완화된 바 있으나, 대출형의 경우에는 여전히 『대부업법』상의 규제를 받고 있다.[6)]

이처럼 핀테크산업에 적용되는 법규나 규제방식이 핀테크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핀테크 관련 법제의 체계와 해외 규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핀테크 규제 개선에 필요한 정책 방향성과 법제적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하므로 핀테크의 정의에 따른 유형별 발전현황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의 정책 사례를 통하여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즉, 각각의 핀테크 유형에 따른 국내법적 적용 범위와 규제 현

4) 금융위원회, “금융개혁 핵심과제 핀테크 : 1년의 변화 - Big 7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 2015.12., 2-7면

5) 안상욱, “핀테크 발목 잡는 5대 족쇄”, BLOTER, 2015.02.05., (http://www.bloter.net/archives/219809 2015.11.30. 검색)

6) 이상일, “[스페셜 리포트] 크라우드 펀딩, ‘핀테크 관심주’로 뜬다”, 디지털데일리, 2015.07.03.,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32100 2015.10.30. 검색); 안상욱, “핀테크 발목 잡는 5대 족쇄”

황을 파악하고, 해외 관련 정책과의 비교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해외의 핀테크 발전 현황과 관련 정책 및 제도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우리나라의 각종 법제 및 규제체계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제 1 장에서 서론을, 제 2 장에서는 우리나라 핀테크산업의 발전현황과 관련 법제를 소개하고, 제 3 장에서는 해외의 핀테크산업 발전 현황과 관련 정책 및 규제방식을 소개하기로 한다. 또한, 제 4 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과 법제적 시사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제 5 장 결론에서는 본 보고서의 전체적인 요약과 함께 향후 핀테크산업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간략히 제시해보고자 한다.

다만, 각 주제별 규제체계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세부내용 도출은 분야별로 별도의 상세한 후속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핀테크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적인 방향성 설정으로 한정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진행되는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워크숍과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해외의 핀테크 관련 규제 현황과 우리나라에서 수용가능한 규제방식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즉, 각 분야의 금융법제 전문가들을 워크숍에 발제자와 토론자로 초청하여 한국, 미국, 영국, 중국, 일본의 핀테크 발전 현황과 관련 규제방식을 검토하는 한편,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중간 Review 과정을 거친 바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실질적인 법제연구의 성과를 담보하였다. 또한, 이러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방식 외에도 인터넷검색을 통하여 현행 법령분석 및 관련 입법안과 정부정

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관련 논문 및 기사 검색을 통한 문헌연구의 방법도 사용하였다.

제 2 장 핀테크 발전 현황과 관련 법제

제 1 절 국내 핀테크 발전 현황

1. 핀테크의 정의와 유형

모바일 시대에 들어 ICT 기술은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면서 스마트 홈, 커넥티드카, 헬스케어 등 새로운 산업 지형을 창출하고 있다. 금융 산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모바일, SNS, 빅데이터 등의 첨단 ICT 기술이 금융 산업에 활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 기술인 '핀테크(Fintech)'가 발현되고 있다.[7)]

핀테크는 모바일 결제, 송금, 개인자산관리 및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관련 기술을 의미하며, 다양한 IT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 개념 역시 계속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8)]

금융위원회가 제공하는 지식마당의 금융용어사전에서는 핀테크(FinTech)를 'Finance와 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금융서비스의 변화로는 모바일, SNS, 빅데이터 등 새로운 IT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반 금융서비스 혁신이 대표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9)] 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핀테크는 '금융 서비스와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만들거나 운용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기술적인 과정을 포함하는 의미로, 의사결정·

7) 김종현, "국내외 핀테크 산업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DIGIECO, 2015.02.25., 2면.
8) 정준호·김정숙, "핀테크(FinTech) 서비스의 주요 사례와 보안 이슈", 『한국멀티미디어학회지』(제19권 제1호),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15.03., 9면.
9) 금융위원회, 금융용어사전 (http://www.fsc.go.kr/know/wrd_list.jsp?menu=7420000&dn_no=489 2015년 11월 23일 최종접속)

위험관리・포트폴리오 재구성・준법관련 업무・성과관리・시스템 통합・온라인 이체와 지불 등 금융기관 업무 전반에 영향을 주는 기술들을 총칭'하기도 한다.[10)]

다음 [표 1]은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발전하고 있는 핀테크산업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국내 핀테크의 분야별 유형 및 특징[11)]

구 분		종 류	특 징
금융 서비스	송 금	모바일 및 이메일 송금	이메일과 모바일을 통해서 개인과 기업 간 송금
		전자화폐	온라인으로 거래 가능한 가상화폐
	결 제	제3자 지급결제	· 상품 및 서비스 결제 편의성 향상 · 가상계좌, 신용카드, 실물계좌 결제
	은행 업무	인터넷전문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온라인 전용으로 여수신 기능을 제공
	자산 관리	온라인 펀드, 보험, 증권	· 온라인으로 다양한 펀드를 살 수 있는 슈퍼마켓의 역할 · 인터넷만을 통해 가입하는 보험 · 온라인 전용으로 주식, 채권, 선물 투자 플랫폼 제공
		P2P대출	개인간 직접 대출(Peer to Peer) 및 대출 중개

10) 이기송, "KB지식비타민: 국내외 핀테크(fintech) 동향과 전망",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4.08.04., 1면.

11) 윤종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4면의 표와 장상수, "핀테크가 정보보호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INTERNET & SECURITY FOCUS』,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02., 7면의 표를 수정・보완하여 재작성.

구 분		종 류	특 징
	투 자	금융투자 플랫폼 (소셜 트레이딩, 크라우드 펀딩)	· 대출, 창업자금 지원 등 투자 관련 금융을 서비스하는 온라인 플랫폼 ·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투자 정보교류를 통한 가치판단 및 투자활동에 영향 · 개인 간 자금조달을 중개해 주는 서비스 제공
ICT 기술	보안 및 데이터 분석	정보보안	· 개인인증방법 및 비대면 금융거래 실명확인에 필요한 다양한 방식 ·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고도화된 금융보안기술[12]
		금융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으로 소비패턴의 인식을 통한 소비활동 증진
		신용평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다 정교한 대출금리 산정

2. 국내 핀테크산업 발전 현황

우리나라의 IT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높은 규제 장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IT와 금융시스템의 융합이 느리게 진행되어 온 경향이 있다고 한다. 즉, 사업등록요건이나 보안 관련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핀테크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13]

다음의 [표 2]는 한국과 핀테크 선진국에서의 규제 환경의 차이를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12) 한편,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업체에서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 System)'을 구축하여 금융거래 사고 관련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13) 민병길, "핀테크 동향과 시사점", 경기연구원, 2015.02.11., 6면

[표 2] 한국과 핀테크 선진국의 규제 환경 차이[14)]

	한 국	핀테크 선진국
규제원칙	positive 원칙: 규제를 일일이 나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면 사업 불가	negative 원칙 : 명시된 규제만 적용 문제 발생 시 사후 규제
사업등록 요건	전자금융업자 등록 시 필요 자본금 10억원~50억원 (전자금융거래법)	월 자금 거래 300만 달러 이하면 자본금 없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
보안인증	공인인증서 필요(현재 정부외에 KISA 등 5개 기관에서 관리→ 효율성↓)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소비자에게 책임)	핀테크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보안 모니터링 소비자는 별도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지 않음 금융사고 발생시 일정기간 동안 회사 전액 보상
금산분리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한도 최대 4%	미국 25%, 이탈리아 15%, 일본 20% 등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

지급결제 시장의 경우, 해외에서는 미국 페이팔, 중국 알리페이 등과 같이 국가별 주도 사업자가 글로벌 경쟁에 나서고 있다. 반면 국내는 초기 단계로 통신사, 인터넷 서비스 기업 등이 경쟁적으로 지급결제 서비스를 내놓고 있으나 아직 뚜렷하게 시장을 주도하는 사업자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에서는 스타트업 등 전문화된 업체들이 핀테크 시장에 뛰어들어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내놓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대형 ICT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14) 김종우・박진형・신근호・이선애・최광현, “은행과 인터넷 애널이 함께 본 핀테크”, 『Industry Issue』, 2015.01.21., 10면의 표를 수정・보완하여 재작성.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영역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지급결제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핀테크 기업들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 걸쳐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상용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15)]

[그림 1] 2014 글로벌 100대 핀테크기업 국가별 비중[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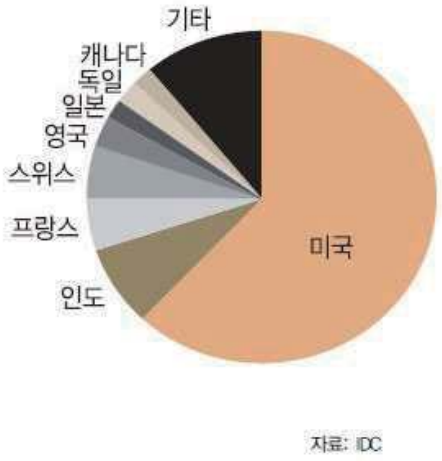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 정부가 적극적으로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17)]

2015년 1월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 창출 및 핀테크 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핀테크 산업 육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18)]

아래의 [그림 2]는 금융위원회가 2015년 밝힌 핀테크육성 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15) 김종현, "국내외 핀테크 산업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DIGIECO, 2015.02.25., 5-6면.
16) 김종현, "국내외 핀테크 산업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5면의 그림을 재인용.
17) 한국인터넷진흥원, "핀테크 국내외 산업 동향과 전망",『해외정책이슈분석』, 2015. 06.15., 5면.
18) 김진완, "[금융과 IT의 융합 핀테크] 핀테크 기업 유치 인프라 구축해 금융중심지를 핀테크 허브로 육성",『부산발전포럼』, 부산발전연구원, 2015.05., 23면.

[그림 2] IT · 금융융합 지원방안[19)]

그리고, 핀테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서는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간편하고 편리한 온라인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서는 고도의 보안성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20)] 따라서, 인증 및 보안 분야의 발전도 기대된다.

다음의 [표 3]은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핀테크 기업과 제공 서비스를 정리한 것이다.

---

19) 금융위원회, "IT · 금융융합 지원방안 -제1차 IT · 금융융합협의회 운영결과", 2015.01.27., 6면의 그림을 인용.

20) 한국인터넷진흥원, "핀테크 국내외 산업 동향과 전망", 『해외정책이슈분석』, 2015.06.15., 6-7면.

[표 3] 국내 핀테크 운용 현황[21)]

구 분	종 류	추진 주체	서비스	기대효과
송 금	메신저	다음카카오	뱅크월렛카카오	편의성 비율효율성
결 제	모바일 기기	삼성전자. LG전자	앱카드	편의성
	메신저	다음카카오	카카오페이	편의성
	포 털	네이버	라인페이	편의성
	통신사	KT	탭사인	편의성
		LG U+	Paynow+	편의성
		SKT	BLE 페이먼트	편의성
	PG업체	LG CNS	Mpay	편의성
		KG 이니시스	INIpay, Kpay	편의성
	오픈마켓	G마켓, 옥션	Smilepay	편의성
		인터파크	Yellowpay	편의성
	기 타	SK 플래닛	Paypin	편의성
		다날	다날 휴대폰 결제	편의성
은행 업무	은 행	KB국민은행 핀테크전담팀	KB간편송금, KB내맘대로적금	편의성 비율효율성
		하나은행 e-금융사업부	핀테크서비스	편의성 비율효율성
		신한은행	스트리미(외환소액	편의성

21) 윤종문,『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여신금융연구소, 2015., 10면과 11면의 표를 기초로 하여, 손경호, “핀테크 시대, 은행 모바일뱅킹도 변해야 산다”, ZDNet Korea, 2015.11.17.,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51116182248&type=det&re= 2015.11.22.검색)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보완하였음.

구 분	종 류	추진 주체	서비스	기대효과
		미래채널부	송금 거래서비스)	비율효율성
		우리은행 핀테크 사업부	위비뱅크(위비대출, 위비꿀적금, 위비페이)	편의성 비율효율성
		IBK기업은행 통합플랫폼팀	원뱅크(원뱅킹, 원금융센터, 원알림 통합 서비스)	편의성 비율효율성
	인터넷 전문은행[22] (예비인가 신청 상태)	카카오뱅크 컨소시움	카카오페이 체크카드 출시	
		K뱅크 컨소시움	종합 자산관리모델 개발	편의성
		I뱅크 컨소시움	가맹점 관련 수수료 비즈니스, 운용(대출)과 신용위험 관리	수익성
자산 관리	오픈마켓	인터파크	Yellowpay (이자 지급)	수익성
투자	크라우드 펀딩	팝펀딩	굿펀딩 (P2P대출모집)	비율효율성 수익성
정보 보안	모바일 보안	라온시큐어	USIM공인인증서비스, 화이트햇 센터	보안성
	보안솔루션 개발	시큐브	Secuve TOS	보안성
	인터넷 정보보안	이니텍	INISAFE Web, Nexess, SM, PKI 등	보안성
	개인, 기업 보안	안랩	V3 등	보안성

22)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기준은 △혁신성 △안전성 △소비자편익 △산업발전 기여도

(1) 송 금

송금 분야에서의 핀테크 발전 단계는 아직 초기 수준에 불과한데, 2012년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전화번호 소액송금 서비스를 출시하기는 했지만 보급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2014년 다음카카오가 개발한 뱅크월렛카카오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들이 공동 개발한 '뱅크월렛'을 카카오톡 메신저 플랫폼과 결합하여 모바일지갑인 '뱅크월렛카카오'를 출시함으로써 송금 및 온 오프라인 가맹점 결제를 가능'하게 한 바 있다.[23]

네이버 '라인'은 회원 간 송금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SKT나 삼성 등 IT기반 대기업들도 지급결제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24]

(2) 결 제

모바일 지급결제시장은 모바일 뱅킹 등 기존 지급수단을 보완하는 형태로 출발하여 점차 차별화된 지급수단으로 진화하여 왔으며,[25] 14년

△해외진출 가능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금융위회는 연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이 정식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은행업 라이선스는 형식 요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으로부터 수신을 받을 수 있는 적격성, 보안에 대한 안전성 등 참여 후보들이 철저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보안전문가가 투입된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방법을 채택한 가운데, 새로 태어나는 '혁신 은행'이 되도록 탄력성과 변화 의지를 갖고 인가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김남희・최진홍, "[인터넷은행의 성공조건] 카카오 '플랫폼', K뱅크 '인프라', I뱅크 '시너지' 격돌", 이코노믹리뷰, 2015.11.19.,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000 2015.11.22. 검색))

23) 김종우・박진형・신근호・이선애・최광현, "은행과 인터넷 애널이 함께 본 핀테크", 『Industry Issue』, IBK투자증권, 2015.01.21., 8면.

24) 하성근, "글로발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혁신 : 핀테크(Fintech)를 중심으로", 『한국경제포럼』(제7권 제4호), 한국경제학회, 2015.03., 17면.

25) 법무법인 인, "모바일 전자금융거래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정책연구』(14-진흥-49), 미래창조과학부, 2014.12.31., 10면.

2분기에는 3조 1,93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 3,480억원) 대비 약 2.4배 성장하였다.[26)]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결제 시에 Active X를 사용하도록 규제하여 대부분의 쇼핑몰이 동 보안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결제 보안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간편 결제가 대안으로 떠올랐으며, 아이디와 카드정보(카드 번호, 유효 기간, CVC 등)를 미리 입력하여 두고 결제 시에 간단한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결제가 완료된다. 다만, 지급결제대행사(PG: Pay Gate)나 카드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도입하여야 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27)]

해외직구나 역직구에 간편 결제 이용이 늘어나면서 향후 간편결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페이나 스마일페이를 이용하여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쇼핑몰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NHN엔터테인먼트는 간편결제에 1,5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8)]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도 2014년 7월 '전자상거래 결제 간 편화방안'을 발표하였으며, 1)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의무 폐지, 2) 결제대행업체의 카드 결제정보 보유 허용, 3) 사전인증을 사후확인으로 전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결정은 향후 국내외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자 및 관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29)]

---

26) 김유미・황승익・문종진・이영환, "인터넷・모바일 뱅킹과 금산분리", 한국경제연구원, 2014.12.17., 8면.

27) 김종우・박진형・신근호・이선애・최광현, "은행과 인터넷 애널이 함께 본 핀테크", 『Industry Issue』, IBK투자증권, 2015.01.21., 5-6면.

28) 김종우・박진형・신근호・이선애・최광현, "은행과 인터넷 애널이 함께 본 핀테크", 6면.

29) 박혜진・이성빈・황석규, "핀테크, 변화의 서막인가? 찻잔 속의 태풍인가?", 『Industry Issue Report』, 교보증권, 2015.02.04., 31면.

[그림 3] 국내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30)]

[표 4] 전자지급결제 유형별 기능과 단점[31)]

방 식	기 능	기능 보완 필요 사항
모바일 신용카드	-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한 USIM에 카드 정보를 수록하고, NFC리더기를 통해 결제 - 온라인에서는 PG업체를 통해 다른 금융정보와 공인인증서 등을 연동하여 결제	- 본인인증 위한 생체정보확인 등 보안 수단의 보완이 필요
휴대전화 소액결제	- 휴대전화 번호와 가입 주민등록 번호만으로 결제 - 결제대금은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	- 소액 결제에만 활용되며 이체업무 불가

30) 박혜진・이성빈・황석규, “핀테크, 변화의 서막인가? 찻잔 속의 태풍인가?”, 11면의 [도표 12]를 재인용.

31) 한국인터넷진흥원, “Industrial Internet Issue Report – Fintech편”, 『KISA Report』,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핀테크포럼, 2015.05., 5면의 표2를 수정・보완하여 재구성

방 식	기 능	기능 보완 필요 사항
전자 지갑	- 스마트폰 앱에 카드 정보를 입력해 온라인 결제시에 사용 - 결제기능 외에도 할인쿠폰, 마일리지 적립 등 부가기능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함	- 이동통신사, 금융회사, 스마트폰 제조 회사 등 대부분 결제 관련 기업위주로 제공됨
모바일 간편결제	- 스마트폰 OS, 결제 앱을 활용하여 결제 - 사이트 아이디를 기준으로 아이디에 등록된 결제정보를 바탕으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결제 가능 - 공인인증서/ActiveX가 필요 없음	- 본인인증 위한 생체정보 확인 등 추가적인 보안 수단 보완이 필요

(3) 인터넷전문은행

일반적으로 은행업무는 오프라인을 통한 대면방식으로 발전해 왔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방식의 은행업무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즉,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통적인 대면방식의 은행업무를 인터넷 전산망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32)]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의 발전속도가 빠르고 스마트기기의 활용도가 높아 그동안 인터넷뱅킹 방식을 통하여 은행업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해왔다.[33)]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인터넷뱅킹과는 달리 지점 설립 없이 온라인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점 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비

32) 이영종, “거래채널 변화에 따른 우체국예금 시사점”, 우정경영연구소, 2013.06.17., 55-65면 표 참조.

33) e-나라지표 - 부분별지표 - ICT발전지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44 2015.10.30. 검색)

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금융거래방식이 도입되면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편리성도 함께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의 [표 5]는 기존의 일반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한 내용이다.

[표 5] 기존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차이점[34)]

분 야	기존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 금융거래	인터넷을 보조적 영업채널로 간주 조회 및 이체거래 중심	인터넷을 주 채널로 영업하며, 모든 거래가 인터넷 통해 이루어짐
영업 기반지역	지역 점포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적 기반을 두고 있는 고객 중심	해당국가 또는 전 세계
영업시간	인터넷뱅킹의 조회, 이체를 제외하고는 영업시간 제한(09시~16시)	24시간 영업 체계를 통한 고객의 시·공간적 접근성 향상
업무범위	금융과 관련한 대부분 업무를 모두 취급	지급결제, 소액대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 업무의 특화(Niche Marketing) 가능

2015년 6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시범인가를 통하여 시범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35)] 국내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시범인가를 받기 위한 업계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36)]

34) 장상수, "핀테크가 정보보호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INTERNET & SECURITY FOCUS』,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02., 14면의 [표 7]을 수정·보완하여 재구성

35) 박혜진·이성빈·황석규, "핀테크, 변화의 서막인가? 찻잔 속의 태풍인가?", 『Industry Issue Report』, 교보증권, 2015.02.04., 32면

36) 김진형, "'은행법 개정 불확실', 인터넷은행 시범인가로 몰린다.", 머니투데이, 2015.07.29.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72815070147906 2015.10.30. 검색)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 가능성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37)]

(4) 자산관리

핀테크기술은 자산관리 분야에 있어서도 이용자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기술을 이용한 자산관리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방식을 통하여 편리성과 저비용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38)]

따라서, 자산관리 측면에서 장기투자자문을 통한 개인자산 포트폴리오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자문과 주식중개의 발전도 기대된다.

다음 [표 6]은 증권업과 보험업에 핀테크산업을 도입하는 경우에 기대 가능한 효과를 정리한 표이다.

[표 6] 증권업과 보험업에 대한 핀테크 도입 기대효과[39)]

구 분		내 용
금융 + IT	금융데이터 수집 및 분석	개인 또는 기업고객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금융소프트웨어	보다 진화된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금융업무 및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제공

37) 장상수, “핀테크가 정보보호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INTERNET & SECURITY FOCUS』,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02, 14면.

38) 박혜진・이성빈・황석규, “핀테크, 변화의 서막인가? 찻잔 속의 태풍인가?”, 『Industry Issue Report』, 교보증권, 2015.02.04., 40면.

39) 박혜진・이성빈・황석규, “핀테크, 변화의 서막인가? 찻잔 속의 태풍인가?”, 40면의 [도표 57] 재인용.

구 분		내 용
	플랫폼	기업과 고객들이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 기반을 제공

1) P2P**대출**

국내에서는 2006년 8월 설립된 머니옥과 팝펀딩 등의 업체들이 P2P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 P2P대출시장의 규모는 2,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40)]

기존의 P2P대출은 투자자와 창업자의 단순 연결 플랫폼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정보를 가공하고 활용하는 기술이 발달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대출전문 기업인 '펀다', 전환 대출 전문기업 '피플펀드', 건축자금 대출전문 기업 '테라펀딩' 등이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한다.[41)]

다만, 우리나라의 현행 금융법 체계 내에서는 P2P대출 업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부업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P2P대출은 대부업체로서 영업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측면에서 발전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42)]

2) **온라인펀드**

우리나라에서 온라인펀드는 2003년 펀드설정액이 50억원으로 처음으로 출시된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며, 2015년 3월까지 상품수 2,400개, 펀드설정액도 2조5,300억원으로 500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43)]

---

40) 고제헌, "핀테크의 부상: 비전통적 은행의 등장", 『HF 이슈 리포트』(15-7호), 한국주택금융공사, 2015.05., 10면.

41) 고제헌, "핀테크의 부상: 비전통적 은행의 등장", 10면.

42) 박혜진 · 이성빈 · 황석규, "핀테크, 변화의 서막인가? 찻잔 속의 태풍인가?", 『Industry Issue Report』, 교보증권, 2015.02.04., 39면

43) 국민정, "핀테크, 자산관리도 온라인 시대", 조세금융신문, 2015.09.25.

이처럼 국내에서 온라인펀드시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 온 배경에는 저렴한 비용 부담과, 정보접근성 확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서비스 등이 꼽히고 있다.[44] 즉, 온라인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고, 접근성을 높인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된 것이다.

다음의 [그림 4]는 온라인펀드의 대표적인 펀드슈퍼마켓의 투자자산 증가폭을 나타낸 도표이다.

[그림 4] 펀드슈퍼마켓 투자자산 현황[45]

2014년 등장한 펀드슈퍼마켓의 이러한 성장세에 영향을 받아 최근에는 증권사들도 온라인 창구 마련 등 비용절감과 편리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6]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17810 2015.11.23. 검색)

44) 국민정, "핀테크, 자산관리도 온라인 시대", 조세금융신문, 2015.09.25.

45) 이재은, "펀드슈퍼마켓 출범 1주년...절반의 성공", 조선비즈, 2015.04.23.)의 '펀드슈퍼마켓 투자자산 현황' 그림을 인용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23/2015042302308.html 2015.11.23. 검색)

46) 펀드슈퍼마켓은 투자자들이 증권사나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펀드에 가입할 수 있어 수수료가 3분의 1 수준이라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 않고 스스로 펀드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실제로 수익률도 기대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은, "펀드슈퍼마켓 출범 1주년... 절반의 성공", 조선비즈, 2015.04.23.,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23/2015042302308.html 2015.11.23. 검색)

2016년부터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해지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도입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우위를 차지하려는 증권사들의 노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47] 즉, 금융거래 전단계에서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의 도입에 따라 온라인펀드는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특히,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제도 도입을 통하여 펀드 판매회사는 판매에만 주력하는 한편, IFA는 전문적인 자문업무를 통하여 종합적인 자산관리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온라인펀드 및 자산관리 상품의 전문화와 분업화를 촉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48]

3) **온라인증권**

온라인증권의 경우에는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49]

KB투자증권은 팟캐스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앱 KB WM CAST를 선보였으며,[50] KDB대우증권과 NH투자증권 등 대형증권사들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활용한 신개념 자산관리형태로 발전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1]

---

47) 박성필, “증권업계에 부는 핀테크 열풍”, 머니위크, 2015.10.18.,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no=2015101520038028147 2015.11.23. 검색)

48) 국민정, “핀테크, 자산관리도 온라인 시대”, 조세금융신문, 2015.09.25.,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17810 2015.11.23. 검색)

49) 박성필, “증권업계에 부는 핀테크 열풍”, 머니위크, 2015.10.18.,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no=2015101520038028147 2015.11.23. 검색)

50) KB WM CAST는 매주 10여편 이상의 콘텐츠들을 정해진 시간에 업로드해 사용자들이 편성시간에 맞춰 원하는 시간에 콘텐츠들을 볼 수 있다(박성필, “증권업계에 부는 핀테크 열풍”)

51) 온라인증권사들의 발전 상황은 로봇이 개인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로 투자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위험요인을 조정해가며 자산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KDB대우증권은 지난 15일 데이터앤애널리틱스와 성공적인 로보어드바이저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데이터앤애널리틱스는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엔진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져져 있다. KDB대우증권은 데이터앤애널리틱스의 빅

NH투자증권 로보어드바이저와 고객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온라인 자산관리 플랫폼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로보어드바이저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하여 'WM 핀테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전해진다.[52)]

4) 온라인 보험

핀테크 기술과 모바일기반은 상품개발 단계에서 상품판매에 이르기까지 보험업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즉,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입자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상품을 판매하고, 보다 정확한 적정보험료 산출을 통하여 보험금 지급에 대한 손해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53)]

[표 7] 보험업 관련 핀테크 활용 분야[54)]

업 무	관련 핀테크 활용 분야
상품개발	금융데이터 수집 및 분석
상품판매	금융소프트웨어, 플랫폼
보험금 지급	지급결제, 금융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금융소프트웨어

(5) 크라우드펀딩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6월 크라우드펀딩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데이터를 분석해 매매시점을 알려주는 기술을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박성필, "증권업계에 부는 핀테크 열풍")

52) 박성필, "증권업계에 부는 핀테크 열풍", 머니위크, 2015.10.18.,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no=2015101520038028147 2015.11.23. 검색)

53) 박혜진・이성빈・황석규, "핀테크, 변화의 서막인가? 찻잔 속의 태풍인가?", 『Industry Issue Report』, 교보증권, 2015.02.04., 40면.

54) 박혜진・이성빈・황석규, "핀테크, 변화의 서막인가? 찻잔 속의 태풍인가?", 40면의 [도표 58]을 재인용.

이 발의된 이래 수년 간 도입이 늦춰지고 있었으나,[55] 최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크라우드펀딩이 금융권으로 편입되어 제도화 된 바 있다.[56]

이처럼 금융법제로 편입된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중개업자로 등록한 플랫폼 업체가 온라인방식으로 소액온라인투자자로부터 크라우드펀딩 자금을 모집하여 스타트업기업 등에게 중개해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57]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가 추가적으로 구체화되면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58]

다만,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현행 대부업으로 분류되어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발전에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6) 보안 및 빅데이터 분석

1) 정보보안

핀테크산업이 발달할수록 금융거래를 위한 보안 중요성도 커지게 된다. 각종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본인 인증 및 보안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금융거래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층적인 보안·인증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59]

---

55) 김종현, "핀테크가 국내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KRX MARKET』(2015 여름호), 한국거래소, 2015.07., 46면.

56) 금융위원회, "(금융위)보도자료_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5. 06.25.

57) 금융위원회,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2014.06.16., 11면.

58) 임석재, "핀테크 보안 동향", 『TTA Journal』(제158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5.03.04., 74면.

59) 임석재, "핀테크 보안 동향", 75면.

최근에는 비대면 실명확인 내지 본인 인증을 위하여 생체정보를 이용한 인증기술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으며, 사전적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험징후를 사전에 인식하여 사고 발생시에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주는 기능을 가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60]

현재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증방법으로는 글로벌 신용카드 기업을 중심으로 구축된 'PCI-DSS'나 기업정보보호 관리현황을 인증하는 'ISMS', 기업들이 가진 개인정보관리 인증 시스템인 'PIMS', 그리고 중소기업 정보보호 현황 및 인증 시스템을 제공하는 '준비도 평가' 등이 활용되고 있다.[61]

2) 금융데이터분석

2014년 국내의 대형 신용카드사에서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는 더욱 엄격해져 왔다.[62]

금융사들이 보유한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현황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로 누적되어 수집되는데, 이러한 방대한 양의 정보는 개인의 실질적인 금융실적이나 신용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인이 가진 실질적인 금융거래 능력과 신용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한 신용평가 방법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63]

---

60) 임석재, "핀테크 보안 동향", 75면.

61) 임석재, "핀테크 보안 동향", 『TTA Journal』(제158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5.03.04., 77면.

62)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 2014.03.10.

63) 박소라,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분석 '핀테크 신비즈니스'로 뜬다", 전자신문, 2015.10.26., (www.etnews.com/20151026000294 2015.10.30. 검색)

이러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다양한 핀테크 사업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개인정보 수집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 일정한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64] 핀테크 신생기업의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정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맞춤형 사업확장 방식과 관련하여 각 신용카드사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65] 2015년 6월 3일에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핀테크산업 활성화 방안인 '빅데이터를 활성화하여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동반성장 토대 구축'[66] 보도자료를 공개함으로써 향후 빅데이터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예정하고 있다.

3) **신용평가**

2014년 '핀테크'라는 핀테크신생기업은 신용평가 자체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정보들을 모아 신용분석을 실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엔진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7]

이러한 신용평가 관련 핀테크 기술은 정부의 관련 정책에 힘입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즉, 2013년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는 금융회사 등이 활용하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바 있으며,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범위를 넓힐 가능성에 대하여서도 검토하기로 한 바 있고,[68] 2015년 1월 27일의 IT·

64) NAVER, "2014년 달라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제도", 2014.01.06. (http://privacyblog.naver.com/80204851533 2015.10.30. 검색)

65) 성상훈, ""핀테크? 빅데이터 필수", 금융권서도 시동", 아이티투데이, 2015.03.22., (http://www.i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236 2015.11.23. 검색)

66) 금융위원회, "빅데이터를 활성화하여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동반성장 토대 구축", 2015.6.3.,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ubject&sword=빅데이터&r_url=&menu=7210100&no=30442 2015.11.25. 검색)

67) 안상욱, "[K핀테크] 소셜 신용평가로 대출 패러다임 바꾼다", 블로터, 2015.05.11., (http://www.bloter.net/archives/227641 2015.11.23. 검색)

68) 금융위원회, "창조경제 구현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2013.

금융융합 지원방안과 6월 3일의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빅데이터를 핀테크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하게 활용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69]

제 2 절 핀테크 관련 법제와 규제 요소

1. 핀테크 유형별 적용 법제

핀테크 관련 법제는 핀테크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그 적용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또한, 금융규제의 근거는 각 금융업별로 다양하게 제정되어 있는 법률들이 된다.

핀테크의 경우에도 각 유형별로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각 대상에 따라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도 받게 된다.

아래에서는 핀테크 유형별 적용되는 다양한 법제를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1) 송 금

인터넷송금과 결제에 사용되는 “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500개 이상의 가맹점

11.27., 21면.

69) 금융위원회, “IT · 금융융합 지원방안 -제1차 IT · 금융융합협의회 운영결과-”, 2015. 01.27., 28-29면;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빅데이터를 활성화하여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동반성장 토대 구축” 별첨자료(“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방안”), 2015.06.03., 1-9면 참조.

에서 이용되고,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며,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5개 업종 수 이상으로서,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되고,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5호).

한편, 2015년 6월 30일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은 제7조(금융회사등) 제5호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를 추가하여 해외직구 내지 역직구에 따른 결제 등에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경우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되며, 외국환업무 종사경력자 내지 관련 교육 이수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 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해야 하며(동조 제2항 제1호), 외국환 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동조 제2항 제3호). 한편, 동법 제14조 4호라.에서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에 따라 지급결제대행업자도 지급・추심・수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 결 제

전자지급수단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자자금이체, 소액결제 등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3호는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6호는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移替)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資金)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8호에서는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는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자지급결제업무와 관련하여 동법 제2조에서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전달하여 자금정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운영' 거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고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로 전자금융업자와 전자금융보조업자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Payment Gateway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나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서는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 내지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통신과금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라고 말하고 있다(동조 제11호). 이러한 통신과금서비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대폰소액결제라고 하는 결제업무가 해당되며, 이동통신가입자는 이를 통하여 재화등을 구입하고 이를 통하여 결제가 가능하다.

(3)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은 2015년 연내 시범(pilot) 인가를 통하여 2016년 쯤 정식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은행법』에는 그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의원입법안으로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을 위한 신동우의원안에서는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으로 정의하는 한편, 김용태의원안에서는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지점을 설치하고 은행업은 주로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으로 정의하고 있다.[70]

7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C1R5U0E7L0U3V1J6Y5O1B0B9P4C7M7)에서 의원안 검색, 최종접속일. 2015.11.22.

(4) 자산관리

1) P2P대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상호 등)에서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제1항),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제2항).

따라서, P2P대출회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P2P대출을 하거나 중개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지된다. 동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②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③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④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가 포함된다(동법 제2조).

(5) 크라우드펀딩

2015년 10월 25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7항에서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는 동법 제117조의4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크라우드펀딩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업체는 동법 제117조의3(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117조의5(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제117조의6(지배구조),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제117조의8(청약증거금의 관리), 제117조의9(투자광고의 특례),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제117조의11(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제117조의12(손해배상책임 등), 제117조의13(중앙기록관리기관), 제117조의14(투자명부의 관리), 제117조의15(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117조의16(검사 및 조치)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러한 크라우드펀딩제도의 도입에 따라 관련 규정도 개정된 바 있다. 즉, 『금융투자업규정』에서는 프로젝트투자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적용범위와, 전업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출자승인 요건, 등록요건, 내부통제기준, 투자자에 대한 통지, 청약증거금의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었다. 또한, 함께 개정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회계감사기준과 게재사항 작성방법, 투자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6) 보안 및 빅데이터 분석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에서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이용하는 경우에는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 현행 법제에서의 규제적 요소

우리나라에서 핀테크산업 발전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은 사전 규제와 같은 법제적 환경요인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71]

즉, 전자금융업자 기준 내지 현행법에 따른 기준과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핀테크기업에게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자본금이나 인력기준, 운용체계 등이 필요한 것이다.

(1) 송 금

송금 서비스에서도 몇가지 규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데, 우선 뱅크월렛카카오의 경우 충전 한도는 50만원, 1일 송금 한도는 10만원, 1일 수금 한도도 50만원이다. 동호회에서 모바일로 경조사비 또는 회비를 걷는다고 가정한다면 다소 낮은 금액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송금받은 돈을 현금화하기 위하여서는 하루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상품 구매는 즉시 구입이 가능하지만 현금에 대해서는 기간적 제한을 두고 있어서 편리성을 감소시키는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 뱅크월렛카카오의 경우에는 NFC[72]로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하여 편리하지만, 아직 가맹점이 많지 않고, NFC 결제 신청을 위한 일정한 절차(PC에서 OTP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71) 김종현, "핀테크가 국내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KRX MARKET』 (2015 여름호), 한국거래소, 2015.07., 45면.

72) Near Feild Communication: IC칩을 탑재하고 결제 단말기에 갖다 대면 결제 가능.

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서 역시 일정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모바일 송금과 결제, 현금화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규제적 요소들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73]

(2) 결 제

국내 지급결제 시장의 경우에도 결제시장이 가진 특수한 환경적 요소로 인해 핀테크 신생기업의 창업이 저조한 편이다. 최근 정부가 기술중립성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특정 기술의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은행・증권사 금융거래에서 ActiveX[74]를 제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동안 사용된 ActiveX에 기반을 둔 인프라가 변화되기 위하여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75]

(3) 금융거래 실명확인 방식

2014년 11월 28일 개정되어 같은 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제2항에서는 '금융회사등은 법 제3조 제7항에 따라 실명거래의 확인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업무의 위탁은 허용된 바 있으나,

---

73) 김종우・박진형・신근호・이선애・최광현, "은행과 인터넷 애널이 함께 본 핀테크",『Industry Issue』, IBK투자증권, 2015.01.21., 8면.

74) ActiveX는 '금융거래 및 보안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수단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파이어폭스나 크롬에서는 동작하지 않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유독 액티브 X를 고집하고 있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의 점유율이 높은 외국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기준이다. 인터넷 사용 도중 무분별하게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에 걸리기도 쉽다. 또한 신용결제를 할 때 액티브 X를 설치하고 나서는 익스플로러 창을 껐다 켜야 하기 때문에 장바구니가 모두 비워진다거나 중복 결제될 위험도 있다'고 한다(김종우・박진형・신근호・이선애・최광현, "은행과 인터넷 애널이 함께 본 핀테크",『Industry Issue』, IBK투자증권, 2015.01.21., 5면).

75) 김종현, "핀테크가 국내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KRX MARKET』(2015 여름호), 한국거래소, 2015.07., 46면.

점포 비용의 절감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된 경쟁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실명확인 업무위탁도 일정한 비용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점이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이용자의 편의 확보가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직접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 인증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인증' 허용의 문제가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18일 브리핑을 통해 금융회사가 다양한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편하고, 사전테스트를 실시하여 본격적인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76]

(4) P2P대출

투자형크라우드펀드는 2015년 7월『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된 바 있으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인 P2P대출은 국내에 별도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P2P대출중개 행위는『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대부업 등이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금지행위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법적 한계에 따라 국내 P2P대출중개업자의 경우 대부업자 내지 대부중개업자로서 활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새로운 모델이 개발되는 경우에는 규제공백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P2B대출의 경우, 자금조달 구조나 투자방식 측면에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과 그 실질이 유사하

7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3차 금융개혁회의에서 IT와 금융의 융합에 따른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 방안에 대해 심의・확정", 2015.05.18.

지만,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행기업 발행한도 및 투자자 투자한도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만 P2B 대출의 경우 규제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크라우드펀딩의 도입 효과를 저해할 여지가 있다.[77]

한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4와 제11조의 2에 따라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아 대부하는 것이 금지되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개인과 개인간의 P2P대출 계약과 P2P대출중개업자의 단순중개 방식이 아니라 P2P 대출중개업자가 대부업체로 등록하여 대부업자와 개인간 계약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78]

또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서는 대부계약의 중요사항에 자필 기재를 요구하고 있으나, 온라인플랫폼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P2P대출중개업자 특성상 준수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자본시장법 체계로 편입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핀테크 신생기업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보험업과 자산운용업은 오프라인상의 투자권유와 보험모집에 의존하여 상품을 판매해 왔다. 이러한 판매방식은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이 낮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나 투자자 수요를 고려한 종합자산운용서비스의 제공에는 어려움이 있었다.[79]

---

77) 서영미, "국내외 P2P대출중개업 관련 규제 동향 및 시사점", 금융투자협회, 2015. 08.05., 7-9면.

78) 서영미, "국내외 P2P 대출중개업 관련 규제 동향 및 시사점", 금융투자협회, 2015. 08.05., 7면.

79) 금융위원회, "IT·금융융합 지원방안 -제1차 IT·금융융합협의회 운영결과-", 2015.01. 27., 27면.

제 3 장 해외 사례

제 1 절 미 국

1. 발전현황

핀테크 컨설팅업체인 엑센츄어(Accenture)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전세계 핀테크산업 투자는 122억 1000만달러(13조 1,244억원)에 달하며, 미국에서는 100억 달러 가까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0]

2013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미국에는 업종별로 가장 많은 핀테크업체가 설립되어 있으며, 전세계 스타트업투자기금의 83%가 미국 시장에 투자되고 있다고 한다.[81] 유럽에서는 영국이 정부주도로 핀테크산업 발전을 주도한다면, 미국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며,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핀테크가 발전되고 있다.[82]

가장 널리 알려진 Paypal은 2014년 기준으로 전세계 80개 국가, 203개 시장 전자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이용자 수는 1억 5,69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83] 이처럼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인터넷은행이 발전해왔으며, 지점보유・연방예금보험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보험가입・온라인계좌개설 조건을 갖춘 인터넷전문은행은

80) 배재광, “글로벌 핀테크 산업동향-미국편”, 『Industrial Internet Issue Report』,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05., 1면.
81) 고제헌, “핀테크의 부상: 비전통적 은행의 등장”, 『HF 이슈 리포트』(15-7호), 한국주택금융공사, 2015.05., 4면.
82) 김종우・박진형・신근호・이선애・최광현, “은행과 인터넷 애널이 함께 본 핀테크”, 『Industry Issue』, IBK투자증권, 2015.01.21., 12면.
83) 김종우・박진형・신근호・이선애・최광현, “은행과 인터넷 애널이 함께 본 핀테크”, 『Industry Issue』, IBK투자증권, 2015.01.21., 11면.

2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4]

미국에서는 은행간 온라인 송금 수수료가 비교적 비싼 편이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업체들이 제공하는 송금서비스도 잘 발달되어 있으며, 금융파생상품 판매를 위하여 전자상거래업체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분석・평가도 잘 발달되어 있다.[85]

핀테크가 미국에서 빨리 발전되어 온 과정에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뱅킹 활용도가 높고 핀테크기업들의 편리한 서비스와 안정성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86]

2. 관련 규제

미국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 공정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산분리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에 대하여서도 엄격한 투자적격성을 요구하고 있다.[87]

미국의 규제방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즉 Negative 방식의 사후규제, 규제합리화 확보, 규제불확실성 제거 등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88]

특히,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통하여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있으며, 미국 증권위원회(SEC)와 선물위원회(CFTC)는 한 해 수십 건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고 있다.[89]

---

84) 김종우・박진형・신근호・이선애・최광현, “은행과 인터넷 애널이 함께 본 핀테크”, 12면

85) 네이버 인터넷산업연구실, “중국과 미국의 금융환경과 핀테크의 성장”, 『Naver Letter』, NAVER, 2015.03.27., (http://nter.naver.com/naverletter/41460 2015.11.24. 검색)

86)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핀테크 벤처의 미국 금융업 잠식, 은행과 증권사를 대체”, 『주간기술동향』(1715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09.30., 27면.

87) LGERI 리포트, “규제 많은 미국이 핀테크를 선도하는 이유”, 2014.12.10., 32면.

88) KISA, “미국의 핀테크 규제와 발전전략”, 『Industrial Internet Issue Report』, 2015.05., 13면.

89) 배재광, “예측 가능한 규제, 혁신서비스 우선 수용”, 『이슈&트렌드』, Techm, 2015.05.18., (http://www.techm.kr/home/bbs/board.php?bo_table=issue&wr_id=392 2015.11.24.

또한 업계의 자율규제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PCI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보안표준에 따라 기준 미달의 업체는 시장의 진입을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90]

또한, 2012년 3월 27일 통과된『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JOBS Act)에서는 연간매출 10억달러 이하의 ‘emerging growth company’를 대상으로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고 있으며, 크라우드펀딩에 대하여서는 일반적인 주식공모에 비하여 공시요건과 회계감사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등록대상을 주주 2,000명 이상으로 하고, 공모에서 면제되는 기준을 연간 5천만 달러로 조정하는 한편,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의무 요건이 있는 주주의 수를 500명에서 2,000명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연간 5백만 달러였던 소규모 공모면제의 자금 조달 한도액을 5천만 달러로 증액하였다.[91]

3.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미국의 핀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는 시장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는 원칙중심 규제 방식을 취고 있다. 미국은 엄격한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 제도를 통하여 정책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다.[92]

이러한 부분은 핀테크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추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포괄적인 금지규정도 많고, 벌률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규제되는 사례가 많으며, 예를 들어, 공인인증서의 경우 명확한 법률적 근거없이 금융당국이 10년간 의무화했다가, 법률개정없이 올해 완화했다.[93]

검색)

90) 김종현, “국내외 핀테크 산업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DIGIECO, 2015.02.25., 7면.
91) 배재광,『글로벌 핀테크 산업동향-미국편』,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5., 13면.
92) 배재광,『글로벌 핀테크 산업동향-미국편』,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5., 13면.
93) LGERI 리포트, “규제 많은 미국이 핀테크를 선도하는 이유”, 2014,12,10., 32면.

또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에 대한 감독의 경우에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94] 이러한 점들은 후발주자인 핀테크 관련 국내기업들이 적극적인 사업운영을 해나가는데 있어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규제 완화의 경우에도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의 비용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규제를 폐지할 수 있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95]

그 밖에도 미국의 경우처럼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비조치 의견서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선 거의 이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위원회가 2008년 금융개혁 방안에서 밝힌 원칙중심 규제로의 전환이나, 2015년 1월 IT · 금융융합 지원방안에서 계획하고 있는 비조치 의견서의 활용[96]은 이러한 미국의 방식을 많은 부분 수렴한 조치로 보인다.

제 2 절 영 국

1. 발전현황

2008년까지는 미국이 전세계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의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는데, 특히 2008년 이후 영국 핀테크 산업의 누적 연평균 성장률은 74% 수준으로 실리콘밸리(13%)와 전세계 평균(27%)를 크게 앞서면서 영국의 핀테크 투자규모(아일랜드 포함)는 전체 유럽지역 투자의 60% 이상을

94) LGERI 리포트, “규제 많은 미국이 핀테크를 선도하는 이유”, 2014,12,10., 32면.
95) LGERI 리포트, “규제 많은 미국이 핀테크를 선도하는 이유”, 2014,12,10., 33면.
96) 금융위원회, “IT · 금융융합 지원방안 -제1차 IT · 금융융합협의회 운영결과-”, 2015.01.27., 21면.

차지하고 있다.[97]

2014년 8월 영국정부가 발간한 'Landscaping UK Fintech'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영국 핀테크 시장은 200억 파운드의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결제(Payment)가 약 100억 파운드, 소프트웨어가 42억 파운드, 데이터 및 분석이 38억 파운드, 플랫폼이 20억 파운드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98] 런던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보다 규모면에서는 훨씬 작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글로벌 금융허브의 지위, 테크시티(Tech City) 등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핀테크 허브로 알려져 있다.[99]

Tech City는 영국의 카메론 정부에 의해 추진된 런던 중심지에 위치한 기술 창업 기업 클러스터로 현재 5,000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밀집해 있으며, 런던왕립대학과 런던시립대학 등 런던 소재 다수의 대학들과 파트너쉽을 형성해 불과 몇 년 만에 실리콘밸리와 뉴욕에 이어 전세계 3위의 기술 창업기업 클러스터로 도약하게 되었다.[100]

영국은 테크시티의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금융산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Level39라는 유럽 최대의 핀테크 클러스터를 별도로 조성하였으며, Level 39는 유망한 핀테크 창업기업들이 안정적인 성장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경영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한편, 핀테크 창업기업들과 HSBC, Citi Group, Barkleys 등 대형 금융회사들 간의 연결을 통해 핀테크 산업성장을 주도 하고 있다.[101]

---

97)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영국의 테크시티(Tech City)와 핀테크", 『KB 지식 비타민』(2015-8호), 2015.01.28., 2-3면.

98) 장대한, "英 핀테크 산업 급성장의 요인은?", KOTRA 해외비지니스정보포털 - 해외시장뉴스 - 산업(상품)·기술 트렌드, 2015.11.06., (http://www.globalwindow.org 2015.11.18. 검색)

99) 2014년 기준으로 영국에서 IT·금융 융합 스타트업 기업은 1300개, 관련 종사자 수는 약 4만 4000명에 이른다고 한다(장대한, "英 핀테크 산업 급성장의 요인은?").

100) 정유신, "핀테크의 확대추세와 금융투자회사의 대응방안", 서강대학교 LINC 사업단, 2015.

101)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영국의 테크시티(Tech City)와 핀테크", 『KB 지식 비

2. 관련 규제

영국 정부는 핀테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통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금융서비스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금융관련 규정정비 및 의견수렴을 위한 전담기구 확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금융서비스 규제청(FSA:Finacial Services Authority)을 설립하여 그 산하에 금융감독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과 건전성감독청(PRA: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를 두어 금융구제기관을 규제기관과 감독기관으로 이원화하여 산업을 촉진시키고 동시에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였다.[102)]

금융감독청(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시장 내 경쟁촉진을 목표로하고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 경쟁촉진 및 규제완화를 주된 방향으로 설정하였다.[103)] 세부적 활동의 일환으로 올해 5월부터 금융테크 기업 육성을 위해 규제 관련 자문서비스를 시작였으며, 결제 인프라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결제방식의 확산을 대비하기 위해 Payment System Regulator를 설립하였다.[104)] 건전성감독청(PRA: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은 금융회사 금융서비스의 건정성 감독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105)]

타민』(2015-8호), 2015.01.28., 5면.

102) 금융보안원, "영국핀테크 시장 및 주요정책현황", 2015.11.09., 9면. (http://fsa.or.kr/Board.do?command=dataView&board_mng_idx=7&board_idx=82&pageNum=1&searchKey=All&searchVal= 2015.11.18. 검색)

103) 금융보안원, "영국핀테크 시장 및 주요정책현황", 2015.11.09., 9면. (http://fsa.or.kr/Board.do?command=dataView&board_mng_idx=7&board_idx=82&pageNum=1&searchKey=All&searchVal= 2015.11.18. 검색)

104) 황나영, "글로벌 금융테크 기업 현황 및 시사점", 『WFRI 금융경제 포커스』(제11호), 2014., 4면.

105) 금융보안원, "영국핀테크 시장 및 주요정책현황", 9면; 황나영, "글로벌 금융테크 기업 현황 및 시사점", 『WFRI 금융경제 포커스』(제11호), 2014., 7면.

정부차원에서도 재무부는 자국내 기업대상 자금지원, 세제혜택, 시장확대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였으며, 무역청은 자국기업의 해외거래 촉진,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자국내 사업유치을 지원하고, 관세청은 신규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조세징수제도를 정비하여 P2P대출에 대한 이자소득세 공제방안(Deduction of income tax from interest) 등을 마련하였고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모델을 승인하면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제도화하였다.[106] 한편, 전화번호를 통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확대하고 편의성과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결제위원회 차원에서 PayM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Bank of Scotland, Barclays 등 9개 은행이 서비스에 참여했으며, 참여기관 증가로 전체 계좌중 90%에서 전화번호를 통한 모바일 송금이 가능할 전망이다.[107]

최근 social media를 통한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영국 정부는 금융상품에 대한 권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서는 금융상품 판매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다만, 금융상품 판매권유에 대한 규제나 광고규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대하여서는 다양한 지침을 제시하여 명확성을 도모하고 있다.[108]

또한, 영국에서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는 투자적격이 있는 투자자에 대한 투자만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관련 정보의 정확한 접근이 필요한데 이에 대하여서는 금융상품판매규정에서 판매권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서는 엄격하게 관리를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109]

---

106) 금융보안원, "영국핀테크 시장 및 주요정책현황", 10면; 황나영, "글로벌 금융테크 기업 현황 및 시사점", 『WFRI 금융경제 포커스』(제11호), 2014., 4면.

107) 금융보안원, "영국핀테크 시장 및 주요정책현황", 10면; 길재식,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395>핀테크(Fintech)", etnews, 2014.09.15., (http://www.etnews.com/20140915000231 2015.10.30. 검색)

108) FCA, "FG 15/4: Social Media and Customer Communications, -The FCA's supervisory approach to financial promotions in social media", FCA, March 2015.

109) FCA, "A Review of the regulatory regime for crowdfunding and the promotion of non-readily realisable securities by other medi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eb. 2015

그리고 테크시티와 같은 벤처단지 조성을 통해 금융테크기업의 창업과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소 자본금규정을 폐지하는 등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사무실 임대료를 런던 중심가의 1/5 수준으로 책정하였다.[110]

3.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영국의 핀테크 관련 규제의 특징은 먼저 정부 주도의 핀테크 사업 지원 및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111]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금융서비스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금융관련 규정정비 및 의견수렴을 위한 전담기구 확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금융서비스 규제청(FSA:Finacial Services Authority)을 설립하여 그 산하에 금융감독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과 건전성감독청(PRA: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를 두어 금융구제기관을 규제기관과 감독기관으로 이원화하여 산업을 촉진시키고 동시에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는 점이 특색이 있다.[112]

FCA는 실무적으로 혁신센타(Innovation Hub)를 설치하는 한편, ‘Project Innovate’를 통하여 핀테크 지원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데, ‘Project Innovate’ 프로그램에 따라 핀테크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규제 위반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으며, 핀테크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규제들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게 된다.[113]

---

110) 황나영, “글로벌 금융테크(Fintech)기업 현황 및 은행에 대한 시사점”, 『ISSUE & INSIGHT』(2014-6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14.07.18., 4면.

111) 김종현, “핀테크가 국내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KRX MARKET』(2015 여름호), 한국거래소, 2015.07., 51면.

112) 성태윤・박기영・박단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미 금융 감독체제의 변화”, 한국금융연구원, 2012., 16-18면.

113) 안수현, “영국의 핀테크관련 산업 육성과 지원방안 개관-금융규제적 관점에서”,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각국의 규제완화 사례 및 시사점 분석』(한국법제연구원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시범인가 및 운용 사례와 같은 Pilot 프로그램을 각 핀테크 유형별로 다양화하여 이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UK Administration(영국의 지급결제협회)는 인터넷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114] 우리나라에서도 업계 자율적인 규제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영국에서는 핀테크 관련 금융분쟁에 대하여서도 금융서비스시장법상의 'Financial Ombudsman Service'를 활용[115]하고 있어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금융분쟁 조정·중재제도를 체계화함으로써 핀테크 관련 분쟁해결에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 3 절 일 본

1. 발전현황

일본의 경우 핀테크기술을 기반으로 통신회사를 중심으로 한 핀테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116]

일본에서는 핀테크산업이 '은행에 의한 온라인몰의 비지니스에의 참여, 선불카드 플랫폼 회사의 매수,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금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매수, 스마트폰을 이용한 은행 대리점 업자의 매수, 스마트폰 상의 자금결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개발 회사의 매수, 금융정보 포털 회사의 매수'와 같은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117]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5.10.28., 32면.

114) 안수현, "영국의 핀테크관련 산업 육성과 지원방안 개관-금융규제적 관점에서", 14면.

115) http://www.financial-ombudsman.org.uk/ (최종검색일자 2015.12.18.)

116) 김종현, "국내외 핀테크 산업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10면.

117) 本間正人, "金融とテクノロジーの『フィンテック(FinTech)』国内法規制の最新動向", (http://judiciary.asahi.com/fukabori/2015091700001.html), 2면(이효경, "일본 핀테크

일본에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NTT도코모의 경우, 2005년 전자결제시장에 처음 진출하여 현재 1,50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전자결제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자 코인베이스에 8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118)]

또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로 금산분리원칙이 완화되면서 소니나 야후와 같은 IT업체들은 일반은행과 협력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기도 하였다.[119)]

KDDI의 경우에도 통신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뱅킹서비스 분야에서 우세한 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에는 미쯔비시도쿄UFJ 50:50으로 공동출자를 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인 '지분뱅크'를 설립하고, 핀테크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120)]

2. 관련 규제

일본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금산분리원칙을 완화한 바 있다. 즉, 은행법 개정을 통하여 비금융기관도 20% 이상의 은행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121)]

일본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심의회 산하 금융분과회의에 '결제업무 등의 고도화에 관한 스터디 그룹'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2)]

사업의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의 최근 동향",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각국의 규제 완화 사례 및 시사점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5.10.28., 55면.

118) 김종현, "국내외 핀테크 산업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DIGIECO, 2015.02.25., 10면.

119) 김종현, "국내외 핀테크 산업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9면.

120) 김종현, "국내외 핀테크 산업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10면.

121) 김미애, "금융과 ICT 기술의 융합을 위한 무(無)규제 원칙 - 금산분리에 가로막힌 핀테크 산업 성장", 한국경제연구원, 2015.02.23., 11면.

122) 김유미 · 황승익 · 문종진 · 이영환, "인터넷 · 모바일 뱅킹과 금산분리", 한국경제연구원, 2014.12.17., 13면.

2015년 5월 19일에는 금융심의회에 '금융그룹을 둘러싼 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은행업무 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123]

일본의 경우에도 핀테크 관련 규제들은 은행법, 대금업법, 출자의 수신·예금·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외환 및 외국무역법,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일본에 있어서의 자금세탁대책을 위한 기본적 법률) 등 금융관련 법제들에 근거를 두고 있다.[124] 이러한 일본의 관련 법제들은 금융소비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125]

3.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일본 은행의 업무는 타 국가들에 비해 굉장히 개방된 상태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계기로 미국, 유럽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는 반대로 일본은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업의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126]

특히, 금융심의회에서 수행되고 있는 '금융그룹을 둘러싼 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워킹그룹'의 향후 논의 방향[127]은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 정책에도 일정부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23) 金融グループを巡る制度のあり方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 (http://www.fsa.go.jp/singi/singi_kinyu/base_gijiroku.html#financial_group) (이효경, 『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회의 자료집』 일본 관련 내용, 한국법제연구원, 2015.11.13., 63면 재인용).

124) 이효경, 『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회의 자료집』 일본 관련 내용, 한국법제연구원, 2015.11.13., 58면.

125) 이효경, 『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회의 자료집』 일본 관련 내용, 60면.

126) 이효경, 『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회의 자료집』 일본 관련 내용, 59면.

127) 이상제, "일본의 금융그룹규제 변화 모색과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한국금융연구원, 2015., 1면.

앞으로도 일본의 핀테크 관련 규제완화 정책 및 법제도의 변화에 대하여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4 장 국내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제 1 절 국내 핀테크 육성정책과 시사점

1. 금융규제개혁과 IT · 금융융합 정책의 기본방향

금융위원회는 2008년 6월 26일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통하여 금융규제개혁의 기본방향을 원칙중심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비조치의견서 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법규위반 가능성 여부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감독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힌 바 있다.[128] 특히 핀테크와 관련하여서는 진입규제 개선방안 측면에서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은행산업내 경쟁 촉진을 위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을 추진하고, 업무범위, 최저자본금 요건완화, 금융실명제 적용 방안 등을 검토한 바 있으며,[129] 학계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130]

이후에도 금융위원회는 2013년 9월 26일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 추진계획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창업기업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시한 바 있다.[131]

2015년 1월 27일에는 제1차 IT · 금융융합협의회 운영결과를 통하여 IT · 금융융합 지원방안을 밝힌 바 있으며, 추진과제를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 전환,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 핀테크 산업 성장 지

128) 금융위원회,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 2008.06.2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면과 13면.

129) 금융위원회,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 8-9면.

130) 구본성,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금융연구원, 2008.08; 김보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과 과제", 『지급결제와 정보기술』(제33호), 금융결제원, 2008.07; 노형식,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따른 과제와 전망", 『월간 금융』, 전국은행연합회, 2008.08; 김병태,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의 법률적 과제", 『상사판례연구』(제22집 제1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09.03.

131) 금융위원회,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 2013.09.26., 2면.

원, 금융보안을 토대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132)]

다음의 [표 8]은 IT · 금융융합 지원방안의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8]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주요내용[133)]

추진과제	주요 내용	세부 내용	특 징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 전환	사전규제 최소화	보안심의 제도 폐지	과도한 사전심사, 세세한 보안규정, 책임부담의 불명확성 등을 개선하여, 사전적 · 전지적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 및 IT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후적 책임을 강화
		인증방법평가위원회 폐지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 개선	
	기술중립성 원칙 구현	특정기술 사용의무 폐지	
		은행 · 증권사 금융거래상 Active-X 제거 유도	
	책임부담 명확화	비금융회사의 법적 책임성 인정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제도 개선	
	규제 예측가능성 제고	유권해석 활용	
		비조치의견서 활용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	한국형 인터넷전문 은행 모델 수립	소유구조 (은산분리 등)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비대면 실명확인	

132) 금융위원회, "IT · 금융융합 지원방안 -제1차 IT · 금융융합협의회 운영결과", 금융위원회, 2015.01.27., 6면.

133) 김미애, "금융과 ICT 기술의 융합을 위한 무(無)규제 원칙 - 금산분리에 가로막힌 핀테크 산업 성장", 한국경제연구원, 2015.02.23., 3면의 표에 금융위원회, "IT · 금융융합 지원방안", 2015.1.27., 1-60면의 내용을 보완하여 재구성.

추진과제	주요 내용	세부 내용	특 징
		자본금 규모	금융규제는 오프라인에 기반하고 있음. 온·오프라인 융합 및 모바일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규율을 재정립하고, 비대면성·쌍방향성·신속성·대중성이 있는 온라인·모바일에 적합한 제도로 개선
		건전성 기준	
		업무범위	
		물리적 점포 허용여부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하위법령 정비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제도 수립	
	온라인판매 채널 활성화	금융상품자문업 제도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도입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산업 기반 지원	『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마련	
		비식별정보에 대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금융상품 개발과 부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금융권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결제분야 낡은 규제 정비	사전설치 없는 간편결제 구현, 전자금융거래와 거래인증 매체분리원칙 폐지, 모바일카드 단독발급	

추진과제	주요 내용	세부 내용	특 징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	핀테크 지원체계 구축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핀테크 신생기업의 경우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 등의 금융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미래창조부 등 관계기관의 제도적·행정적·재무적 지원을 통하여 핀테크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민간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 지원	정책자금 지원	
		중기창업지원 개선 등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전자금융업 등록자본금 탄력적 운용 등	
	전자지급 수단 이용 활성화	이용한도 확대 등	
	전자금융 업종 규율 재설계	업종 재편을 통해 영업실질에 따른 업종 등록	
		전자금융업자 성격에 따른 합리적 건전성 규율	
금융 보안을 토대로 한 금융 소비자 보호	금융권 자율보안 체계 구축	자율적 보안인증체계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에 따라 IT·금융융합 지원방안 추진.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지속적 추진하면서, 보안규제 방식은 사전규제 최소화로 사
		전사적 위험관리	
	정보보호 및 금융보안 입법 노력 강화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전자적 침해행위 대책 보강	

추진과제	주요 내용	세부 내용	특 징
	온라인 채널의 불완전 판매 방지	금융상품간 합리적 비교선택 위한 공시체계 강화	후점검을 강화하고 책임을 명확화
		온라인 금융상품 설명 의무 실효성 강화	
		온라인 금융상품 특성에 맞는 광고 규제체계 개선	
		온라인 불건전영업행위 감독 강화	
		취약계층 온라인 금융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규제체계 개선	

2. 오픈플랫폼

금융위원회는 2015년 7월15일 '핀테크 오픈플랫폼(Open API[134] 및 Test-Bed)' 구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연내 Test-Bed를 구축하고, 2016년 상반기에 Open API 홈페이지 구축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핀테크 오픈플랫폼에는 17개 시중 은행 및 15개 증권회사가 참여하게 되며, 금융결제원이 주관하는 은행권API와 코스콤이 주관하는 금융투자업 API로 구성된다.[135]

134)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특별한 프로그래밍 기술 없이도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 명령어 덩어리(금융위원회, "세계최초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인프라(오픈 플랫폼) 구축된다 - 제3차 핀테크 지원센터 Demo day 개최", 2015.7.15., 7면)

135) 금융위원회, "세계최초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인프라(오픈 플랫폼) 구축된다 - 제3차 핀테크 지원센터 Demo day 개최", 1-5면.

금융권 내에서도 오픈플랫폼은 IT분야와 금융분야의 융합을 통한 상생의 방법으로도 평가받고 있다.[136]

특히,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권 공동 오픈 플랫폼은 전세계 최초로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핀테크산업 발전과 육성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핀테크산업 발전 속도가 빠르고, 정부가 핀테크 육성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Data Sharing and Open Data for Banks'를 추진해왔으나, 금융기관별로 구축된 오픈플랫폼을 통합하는 표준화작업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7] 따라서, 우리나라도 '세계 최초 구축'이라는 목표를 우선시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운용기반과 기술적 구현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3. 인터넷전문은행

(1) 은행법상 예외규정 방식의 도입

해외에서는 1990년대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이 발전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추진되어 왔으나 법제도적인 한계와 은행부실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즉, 2002년 SK텔레콤과 안철수연구소, 코오롱, 롯데 등이 컨소시엄 방식으로 '브이뱅크(V-bank)'라는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2008년에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려고

136) 김동석, "[대담] 김주하 NH농협은행장 "34년 은행 외길, 핀테크의 또다른 말은 어깨동무"", 전자신문, 2015.11.24., (http://www.etnews.com/20151124000453 2015.11.24. 검색)

137) 금융위원회, "세계최초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인프라(오픈 플랫폼) 구축된다 - 제3차 핀테크 지원센터 Demo day 개최", 1면.

하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은행건전성 악화 및 과도한 금리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에 따라 무산되었다.[138)]

2015년 10월 6일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자본금 요건과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보유한도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동 개정안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해외 각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비자중심의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함으로써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핀테크산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ICT 기업 등 창의성·혁신성을 갖춘 인터넷전문은행(개정안 제2조제1항제11호 신설)에 대하여 자본금 요건을 완화(개정안 제8조제2항제1호 단서)하고,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보유한도 규제를 완화(개정안 제16조의2제3항제4호 신설)하는 한편,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안 제35조의2제9항 신설) 하고 있다.

아래의 [표 9]는 동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이다.

[표 9]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은행법』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139)]

현 행	개 정 안
제 2 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 2 조(정의) ① ---------- ----------

138) 이성복,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관련 주요쟁점",『자본시장 Weekly』(2015-27호), 자본시장연구원, 2015.07.14., 2면.

139)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0.6., 5-9면 [신·구조문대비표]를 인용(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통계 - 계류의안통계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C1I5N1E0Q0H6X1C5S3O8D4K4G9O3U7&list_url=/bill/jsp/MooringBill.jsp%3F 2015.11.20. 검색)

현 행	개 정 안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지점을 설치하고 은행업은 주로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 8 조(은행업의 인가) ① (생 략)	제 8 조(은행업의 인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
1.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 ---- -- 지방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동일인이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제2항·제3항제4호---------- ---------- 제2항·제3항제4호---------- ----------.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제한 등) ①·② (생 략)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③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등) ① ~ ⑧ (생 략)	제35조의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 및 대주주가 지배하는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회사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

현 행	개 정 안
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3의5. (생 략)	1. ~ 3의5.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6.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9항을 위반하게 하여 신용공여를 받거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3의6. (생 략)	3의7. (현행 제3호의6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5조의3(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38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5조의3(과징금)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35조의2제9항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
3. ~ 17. (생 략)	3.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제35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
18. (생 략)	19. (현행 제18호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벌칙)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35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3.·4. (생 략)	4.·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이러한 은행법 개정을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추진에 대하여 반대의견도 상당부분 제기되고 있다. 즉, '금융(Fin)의 시각에서 기술(Tech)을 수용하는 정책 시각으로는 핀테크 산업이나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140] 이러한 견해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하여서는 금융(Fin)과 기술(Tech)의 융합이 필요하며,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정책 융합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어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현재 핀테크 육성을 위하여 2014년 4월 14일 출범한 민관합동협의체인 '핀테크지원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미래창조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부처와 금융업권별 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의 금융권, 한국핀테크포럼,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뉴지스탁, 웹케시, 한국사이버결제 등 핀테크 업체 및 협회도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1] 동 협의체에서는 핀테크 생태계 조성

140) 유병연, "금융 vs IT: 융합없는 핀테크 정책", 한국기자협회, 2015.9.23.,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7431 2015.11.22. 검색)

141) 조계원, "핀테크 지원 협의체 출범, 26개 기관 참여 회의 개최", 글로벌이코노믹, 2015.4.14., (http://www.g-enews.com/ko-kr/view.php?ud=20150414111643996342 7_1

을 위해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 발굴과 개선 방향 등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2) 비대면 금융실명거래 확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유권해석을 통하여 고객이 금융계좌의 실지명의인인가에 대하여 '대면'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142)]

즉, 고객이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면 창구직원은 증표의 재질과 인쇄상태 등을 통하여 위조나 변조여부를 확인하고 증표 사진과 고객의 얼굴을 대조함으로써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증표 사본을 보관하게 되는 일련의 처리 방식을 취하고 있다.[143)]

해외에서는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우편, 영상통화, 타기관 정보 조회, 계좌이체정보 활용 등 다양한 비대면 확인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144)]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2015.11.20. 검색)

14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금까지 금융회사의 실명확인은 실명확인증표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반드시 거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거래자를 직접 대면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인터넷 화상대면에 의한 실명확인 가능여부",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 - 유권해석 - 법규유권해석 - 회신사례, 2012.6.25., (http://www.fcsc.kr/C/fu_c_01_02_02.jsp?answer_seq=3885& idx=27 2015.11.22. 검색))

143) 금융위원회, "개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이제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증권사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붙임자료)", 2015.5.18., 1면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7&sch1=&sword=&r_url=&menu=7210100&no=30417 2015.11.20. 검색).

144) 다만 외국의 경우에도 자금세탁 방지를 위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확인하게 된다. 즉, 계좌개설시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의무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게 된다. 이는 국제적으로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

우편이나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확인 방식은 인정되지 않았다.[145)]

이에 대하여 2015년 5월 18일 금융위원회는 브리핑을 통해 금융회사가 다양한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비대면확인의 제도적 허용을 위하여 사전테스트를 실시하고 12월부터 관련 유권해석을 변경

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대한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매뉴얼'을 통하여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개요와 금융거래 보고제도, 검사기법, 현장검사 등에 대한 내용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매뉴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금융법규 - 해설서・매뉴얼 - 검사매뉴얼, 2012.5., (http://www.fss.or.kr/fss/kr/bbs/view.jsp?url=/fss/kr/1207389137741&idx=1371802722206&bbsid=1207389137741 2015.11.22. 검색)

145) '우편에 의한 실명확인증표 사본 송부 → 거래정지계좌 개설 → 인증서 확인후 거래개시할 경우 실명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등은 유권해석을 통하여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실명 확인 이행 여부",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유권해석-법규유권해석-회신사례, 2008.12.31. (http://www.fcsc.kr/C/fu_c_01_02_02.jsp?answer_seq=821&idx=15 2015.11.22. 검색)).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 등의 실명확인 방법으로 화상대면으로 본인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서도 금융위원회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금까지 금융회사의 실명확인은 실명확인증표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반드시 거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거래자를 직접 대면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상대면 실명확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여 영상통화 등의 화상대면에 대하여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인터넷 화상대면에 의한 실명확인 가능여부",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 - 유권해석 - 법규유권해석 - 회신사례, 2012.6.25., (http://www.fcsc.kr/C/fu_c_01_02_02.jsp?answer_seq=3885&idx=27 2015.11.22. 검색))

하여 본격적인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146)]

[표 10] 금융거래 실명확인 관련 유권해석 변경 내용[147)]

	현 행	변경 예상 내용
금융거래 실명확인 관련 유권해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실명확인방식을 "금융회사가 거래자를 대면하여 실명확인증표상 사진 등과 비교함으로써 거래자와 실지명의간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석	- 금융회사가 거래자의 실명 확인 시 대면확인이 원칙이나,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경우 다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①~④ 중 2가지 방법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⑤~⑦의 방식을 추가사용하도록 권고함 ※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예시 ① 거래자로부터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받고 해당 증표의 발급기관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 ②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가 거래자와의 영상통화를 통해 확인 ③ 업무 제휴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출받아 확인 ④ 거래자 명의로 다른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계좌와의 거래를 통해 확인

146)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 11면 https://www.fsc.go.kr/downManager?bbsid=BBS0029&no=96532 최종접속일 2015.11.20.

147) 금융위원회, "서울신문의 ""사기꾼 무서워 못합니까" 금융당국 일방통행에 은행들 골머리"(2015.11.13. 조간)제하 기사 관련" 보도자료, 2015.11.13.,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ubject&sword=금융당국 일방통행에 은행들 골머리&r_url=&menu=7210100&no=30735 2015.11.20. 검색) 내용과 금융위원회, "개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이제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증권사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붙임자료)", 2015.5.18., 12면의 '유권해석 변경(안)'을 수정・보완하여 재구성.

	현 행	변경 예상 내용
		⑤ 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 ⑥ 타기관 확인결과를 활용 ⑦ 다수의 개인정보를 통한 검증 방식

즉, [표 10]의 내용과 같이 금융위원회가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경우는 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② 영상통화 등을 통해 화상대면을 실시할 수 있고, ③ 현금카드 등을 전달할 때 실명확인을 하고, ④ 기존계좌를 활용하여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는 ⑤ 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생체정보 활용 등) 내지 ⑥ 타기관 확인결과를 활용하거나 ⑦ 다수의 개인정보를 통한 검증 방식 등을 활용하여 2가지 이상의 방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비대면 실명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는 유권해석 변경이후부터 자율적으로 원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가 가능하다.[148)]

이처럼 비대면 금융거래 실명확인 방식의 채택을 통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다중실명확인절차(Milti-Check System)를 통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편의성과 안전성을 모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향후 고객확인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에 있는 핀테크업체들의 경우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4. 해외송금과 소액외환이체업

세계 각국에서는 외환관리방식을 다르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용 법제나 외환송금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업자의 요건도 각각 다

148) 금융위원회, “서울신문의 ““사기꾼 무서워 못합니까” 금융당국 일방통행에 은행들 골머리”(2015.11.13. 조간)제하 기사 관련” 보도자료.

른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정 전 외환관리법에서 외국환은행에게만 외환이체를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해외송금 업무는 실무적으로 외국환은행만이 담당해 왔다.[149)]

다음 [그림 5]는 기존 환거래은행 중심의 외환이체 구조 및 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외환이체 구조와 관련 비용[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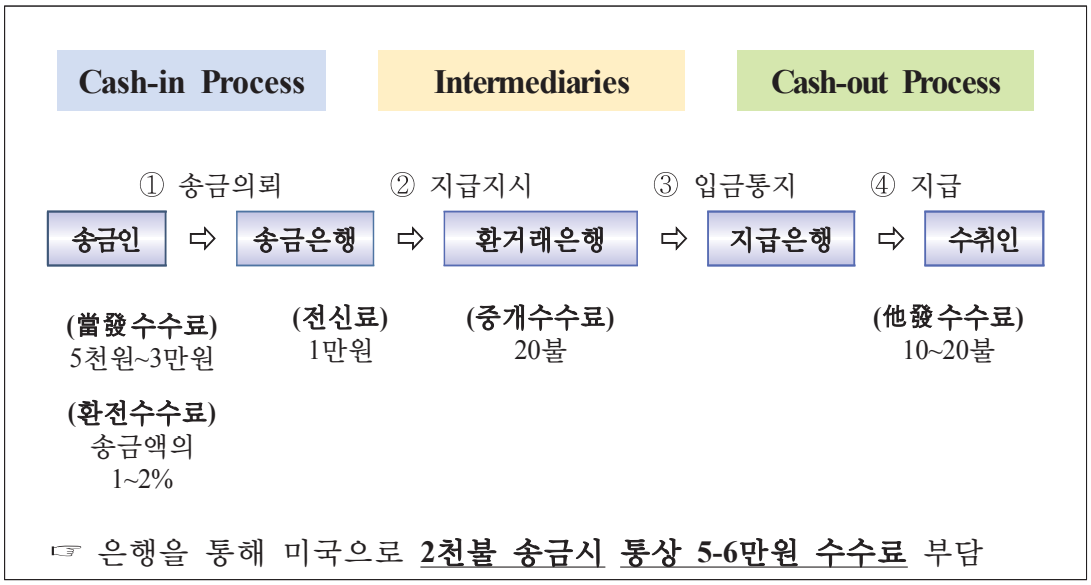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핀테크 기술의 구현으로 인하여 해외직구나 역직구와 같은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해외에서의 결제 방식도 다양화되고 이에 따라 외환송금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51)]

149) 기획재정부, "금융사들, 원화·외화 구별없이 사실상 모든 업무 가능", 2015.12.10.

150) 기획재정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Q&A』,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뉴스-보도자료-외환제도 개혁방안, 2015.6.29., 9면 (http://www.mosf.go.kr/news/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sub_category=126&hdnFlag=1&hdnDiv=262&&actionType=view&runno=4095144 2015.11.25. 검색),. 10면의 그림을 인용.

151) 일례로, 외환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 송금 서비스에서는 지정계좌없이 특정 이름을 쓰고 송금한 후에 상대국에 있는 수신자에게 이름과 ID를 알려주면, 인출하려고 하는 사람이 송금자의 이름과 ID를 입력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2015년 6월 29일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통하여 '외국환은행이 아닌 경우에도 국경간 자금 이체를 영위할 수 있도록『소액 외환이체업』이라는 별도의 업태를 도입'하고, '소액 외환이체업'은 등록제도로 운영해 나갈 계획을 밝힌 바 있다.[152)]

즉, Paypal 등의 전자결제와 같이 국경간 결제 및 송금이 실제로 이용되고 있으나, 현행의 외환송금 규제방식은 외국환은행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방식이 핀테크 기업들의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한편, 이용자의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을 정부가 인식한 것이다.[153)]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7월 1일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내・외국인들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구매(직구・逆직구)시 대금결제의 편의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의 국경간 대금의 지급·수령을 허용'[154)]하겠다는 의지도 공개한 바 있다. 향후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 소액외환이체업자의 외국환업무가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이러한 지급결제 및 송금에 있어서의 핀테크 규제 개선을 통하여 일정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이러한 방식은 미국에서의 채권((Note) 발행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수수료가 은행을 통한 송금보다는 싸지만, 인터넷사기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수수료 차액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 해외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현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 해외공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한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3천달러 이내의 경비를 긴급히 지원하고, 국내 외교부 계좌를 통하여 입금을 받는 방식)'를 통하여 소액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된다(외교부, '영사콜센터, 개소 10주년을 맞아 해외 체류 우리국민을 위한 '119안전센터'로 탈바꿈', 외교부홈페이지 - 뉴스 - 보도자료, 2015.10.20.,
(http://www.mofa.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ofat=001&menu=m20_30&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6%26boardid=235%26tableName=TYPE_DATABOARD%26seqno=356763 2015.11.25. 검색)

152) 기획재정부,『'외환제도 개혁방안' Q&A』, 9면.

153) 기획재정부,『'외환제도 개혁방안' Q&A』, 10면.

154) 기획재정부,『'외환제도 개혁방안' Q&A』, 9면.

제 2 절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

1. 핀테크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는 2008년 금융개혁 방안에서 원칙중심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규제방식의 변화를 의지를 보여왔으나, 국내 금융규제는 기본적으로 Positive 방식의 사전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전규제 방식은 핀테크기술의 빠른 발전속도를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핀테크를 기반으로 발전한 다양한 유형의 금융거래가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틀 내에서만 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핀테크신생기업의 금융업 진출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르게 된다. 각종 심의를 통해 금융서비스상품의 시장진입을 결정하고 규제하게 되면 핀테크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에는 금융업에 진출하는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핀테크산업 육성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정부에서는 사전규제 최소화나 원칙중심 규제 등 규제방식 전환을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개혁 정책들에 기반하여,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서는 전자금융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특정 기술에 대한 편향된 정책이 생기지 않도록 기술중립성을 유지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다만, 핀테크 분야의 금융업 편입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적시에 파악하여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감독체계상의 전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2015년 1월 IT・금융융합 지원방안에서 밝히고 있는 유권해석 내지 비조치의견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나아가 좀 더 적극적인 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위하여서는 핀테크산업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다

양한 문제에 대한 규제나 법제 분야의 대응책 수립을 위하여 긴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IT · 금융융합협외회'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산 · 관 · 학 핀테크 및 관련 법제 전문가가 폭넓게 참가할 수 있는 다층적인 전문가 그룹의 양성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효과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조직들을 운영함으로써 해외의 핀테크 관련 발전 현황과 규제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러한 해외 사례를 우리나라의 금융체계에 적합한 방식으로 수렴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1) 핀테크 생태계 조성

핀테크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생태계 육성이 필요할 것이며, 핀테크 기술기업과 금융회사가 함께 협력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 한다.

대표적인 예로 글로벌 컨설팅사인 Accenture의 경우 핀테크 생태계 육성을 위한 FinTech Innovation Lab을 운영하고 있으며 FinTech Innovation Lab에서는 핀테크 신생기업들의 발전에 필요한 플랫폼을 조성하여 주요 글로벌 은행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12주간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155] 이러한 프로그램은 뉴욕과 런던, 홍콩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2010년 Accenture와 New York의 협력에 의하여 Partnership Fund Program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에 London, 2014년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HongKong)에도 개설되었다.[156]

---

155) Fintech Innovation Lab 홈페이지(http://www.fintechinnovationlab.com/ 2012여수세계박람회.11.22. 검색)

156) Partnership for New York City Partnership Fund(http://pfnyc.org/our-investments/ 2012여수세계박람회.11.22. 검색)

아태 핀테크 이노베이션 랩(FinTech Innovation Lab Asia Pacific)은 Accenture와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HSBC 등의 금융기관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핀테크신생기업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쟁을 통해 선발되는 신생 핀테크기업은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中信銀行 (國際(China CITIC Bank International Limited.), 中国建设银行(亞洲)(China Construction Bank(Asia)), HSBC(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J.P. Morgan, Morgan Stanley, UBS(Union Bank Switzerland), Maybank, StandardChartered, GoldmanSachs, Credit Suisse, Commonwealth 등 금융회사의 멘토링을 받게 된다.[157)]

이러한 생태계 조성의 노력은 기술적 혁신이 필요한 금융회사와 자금이 필요한 핀테크 신생기업들의 협력을 통하여 경기활성화나 수익모델 창출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ccenture는 FinTech Innovation Lab 운영을 통하여 금융회사 임원이 멘토링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업화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함으로써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혀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핀테크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158)]

우리나라에서도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서는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 정부와 금융기관, 핀테크 신생기업, 벤처캐피탈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59)] 즉, 금융회사와 핀테크 신생기업, IT기업 간의 협력 내지 업무제휴 노력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핀테크 생태계육성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157) Fintech Innovation Lab 홈페이지 - Asia-Pacific (http://www.fintechinnovationlabapac.com/about/partnerships.aspx 2012여수세계박람회.11.22. 검색)

158) 김우람, "[핀테크] '주목 e기업' 액센츄어 핀테크 이노베이션 랩, 될성부른 스타트업 찾아 핀테크 유망주로", 이투데이, 2012여수세계박람회.05.06. 기사 (http://news.zum.com/articles/21755215 2012여수세계박람회.11.22. 검색)

159) 길재식, "K-핀테크 이노베이션 랩을 만들자", etnews, 2012여수세계박람회.9.21. 기사 (http://www.etnews.com/2012여수세계박람회0903000403 2015.11.22. 검색)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활용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은 2014년 3월 민간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한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엑셀러레이터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로 한 바 있다.[160] 엑셀러레이터란, '성공벤처인 등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초기 창업자를 발굴, 투자뿐만 아니라 6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투자자·고객 지향형 성공 제품을 만들도록 '실전창업교육과 전문 멘토링'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기관 또는 기업'을 말한다.[161]

아래의 [표 11]은 엑셀러레이터의 육성 방향과 추진 정책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 11] 엑셀러레이터 육성 방향 및 지원 정책[162]

육성 방향	지원 정책
국내 엑셀러레이터 전문역량 강화	① 해외 유수 엑셀러레이터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국내 스타트업 공동 발굴·육성 지원, 해외 관련 협의회·교육 프로그램 참가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역량 확충

160) 미래창조부·중소기업청, ""민간 역량을 활용한 창조경제 성과 조기 가시화 추진" 미래부·중기청『글로벌 엑셀러레이터』본격 육성! - 제7차 창조경제위원회 개최,『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계획』확정-", 2014.3.7. 보도자료, 1-3면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NEWS_32&seq=45156&pageIndex=56&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Unit=10&mc=usr0001031 2015.11.22. 검색)

161) 미래창조부·중소기업청, ""민간 역량을 활용한 창조경제 성과 조기 가시화 추진" 미래부·중기청『글로벌 엑셀러레이터』본격 육성! - 제7차 창조경제위원회 개최,『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게획』확정-", 1면.

162) 미래창조부·중소기업청, ""민간 역량을 활용한 창조경제 성과 조기 가시화 추진" 미래부·중기청『글로벌 엑셀러레이터』본격 육성! - 제7차 창조경제위원회 개최,『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게획』확정-", 2-3면.

육성 방향	지원 정책
	②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분야를 시작으로 한 산업분야별,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특화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전문화 ③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지역별 특성화
엑셀러레이터의 협업체계 확충	① 대기업과 선도벤처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 대기업·선도벤처가 직접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창업기획사' 운영을 정부가 후속으로 지원하는 방식, △ 엑셀러레이터의 대기업 등과 연계를 지원하는 방식, △ 대기업 수요에 기반한 수요 연계형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 ② 엑셀러레이터가 벤처캐피탈, 창업보육센터 등 기존의 창업 지원기관과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후속투자, 보육공간 등을 연계 지원 ③ 공모전, R&D 등에 선발된 스타트업에 대해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한 멘토링과 후속투자 및 해외진출 시 전문 컨설팅 등 패키지식의 지원 추진
국내 엑셀러레이터의 성장 기반 구축	① 성공 노하우의 체계화와 공동투자 등 협력의 장 마련을 위한 엑셀러레이터 전문 협의회*를 구성(2014년 출범) ② 스타트업의 합리적 선택과 성과 검증 등을 위해 엑셀러레이터의 성과정보 제공과 공유체계가 마련 ③ 본격적인 엑셀러레이터 육성에 필요한 법·제도화 과제 본격 논의

또한, 중소기업청은 2015년 9월 9일 'R&D 성과 제고' 방안으로 ICT 융합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목표로 3월에 발표한 『K-ICT 전략』의 이행을 통한 초연결사회 및 SW 중심사회 구현을 밝히고 있다.[163] 즉,

163) 미래창조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기업청, "경제혁신 분야 예산 32조원 투입으로 경제 재도약 적극 뒷받침",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새소식 - 보도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 첨단기술과 의료, 금융, 교통, 도시 등 타 분야간 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실증’하기 위하여 핀테크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에 2016년 30억원을 편성할 것을 밝히고 있다.[164]

따라서, 민간차원에서는 이러한 미래창조부와 중소기업청이 주도하는 핀테크 신생기업 육성을 위한 엑셀러레이터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부차원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온라인 금융과 전자상거래의 발전

(1)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1) 온라인 보험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검색・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추진 중이며,[165]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상품을 찾게 되는 온라인 채널의 특성을 감안하여 오프라인과 다르게 승환계약이나 꺾기 등에 대한 보험가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자료, 2015.9.9., 1~2면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NEWS_32&seq=52532&pageIndex=7&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Unit=10&mc=usr0001031 2015.11.22. 검색)

164) 미래창조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기업청, “경제혁신 분야 예산 32조원 투입으로 경제 재도약 적극 뒷받침”,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새소식 - 보도자료, 2015.9.9., 5면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NEWS_32&seq=52532&pageIndex=7&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Unit=10&mc=usr0001031 2015.11.22. 검색)

165) 금융위원회, 『IT・금융융합 지원방안 -제1차 IT・금융융합협의회 운영결과』,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2015.1.27., 27면 (http://www.fsc.go.kr/ 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26&sch1=&sword=&r_url=&menu=7210100&no=30227 2015.11.18. 검색)

또한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비교공시 과정 중에 가입 할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하고,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하여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TF에서는 2015년 11월 말 자동차보험과 단독실손의료보험, 여행자보험, 연금보험,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에 대한 온라인판매채널('보험다모아')을 오픈하기로 하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166]

다만,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사이트 가입 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관리와 소비자 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본다.

2) **온라인 펀드**

금융위원회는 2015년 1월부터 금융상품자문업 제도[16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168]를 도입하기로 하고, 개인 맞춤형·복합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투자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에 대해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을 받아 개인의 수요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2015년 9월 2일 금융위원장의 '금융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는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업계 자율규제 확립을 전제로 복합점포 운용, 온라인 채널 활용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소비자의 편의성과 선택

166) 홍창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11월 말 오픈", 파이낸셜뉴스, 2015.11.22., (http://www.fnnews.com/news/201511221820252709 2015.11.22. 검색)

167) 금융상품자문업(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은 금융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투자자에게 최적의 상품을 자문하는 제도를 말한다.

16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ISA; Individual Wealth/Savings Account)는 개인의 생애설계를 토대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한 계좌에서 관리 가능한 계좌를 말한다.

권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는 상품간 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예금,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의 다양한 금융자산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자문이 필요하며,[169] 이에 금융상품자문업과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를 연계하는 것은 고객의 편의성과 세제혜택 등에도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전자상거래 활성화

그동안 정부는 ActivX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제도화되어 있던 관행을 개선하여 인증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해외 직구/역직구 등에 필요한 전자지급결제에 편의성과 기술중립성을 도모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결제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하여 e-commerce 시장의 확대와 핀테크산업의 상호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핀테크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투자상품을 개발하고 지급결제 수단도 다양화 함으로써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외환송금 방식에도 일정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지급결제 방식과 수단을 다양화 하는 동시에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리성, 보안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크라우드펀딩과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를 통하여서는 투자방식이나 거래방식에 있어서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핀테크기술을 활용한다면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온라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전자상거래에서도 소비자의 기호와 특성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169) 황원경,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WA)의 이해와 도입 효과", 『KB 지식 비타민』 (14-59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4.07.30., 6면.

4.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이 가진 가장 두드러진 속성은 '신뢰'와 '안전'에 기반한 편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핀테크산업의 경우, 금융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성·안전성·편리성을 함께 확보해야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편의를 기본으로 하되 이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 사고방지체계를 함께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온라인 채널의 고객정보 관리

온라인보험슈퍼마켓의 오픈을 앞두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금융위원회가 주도하여 설립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그동안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에서 각각 관리해오던 고객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금융업자의 구체적 행동 기준도 제시된 바 있다. 즉,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와 같은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고객신용정보를 일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신용정보 및 정보주체 보호의 자기정보결정권 보호를 강화하고, 업권 협회별로 각각 관리되어 온 고객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용조회업도 개편되었다.

이처럼 그동안 보험개발원과 각 협회가 개별적으로 관리하였던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연령과 주민등록번호 내지 보험가입 내역, 질병 등의 정보는 2015년 9월 12일부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관리하게

되며, 이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보험업계에서는 "영업 및 상품 개발 등에 필요한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 정보 등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게 되었으며, 업계의 기준이 될 순보험율 산출 등에 있어 애로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170] 따라서, 향후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운용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보험업계의 애로사항을 줄일 수 있는 실무적인 방안에 대하여 산·관·학의 협력을 통하여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인터넷전문은행 영업범위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핀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는 기존의 시중은행들과는 다른 영업전략이나 영업범위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범위는 핀테크와 관련하여 지급결제, P2P대출, 크라우드펀딩 등의 업무와 연계하여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의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의 '지급지시'를 통한 지급결제서비스 외에도 최근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전자지급결제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규제되기도 한다. 다만, 지급·청산·결제를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곳은 은행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이러한 은행의 고유 영업범위인 지급·청산·결제를 모두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진입규제 내지 건전성규제가 일반은행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보

170) 손성은, "신용정보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업계 '술렁'", 보험매일, 2015.09.08.,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369 2015.11.22. 검색)

안 시스템이나 결제・청산・지급 관련 시스템장애 발생시에 이용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손실 및 손해를 시범운용을 통하여 조사하고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범위를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영업범위가 넓어지는 경우에 대한 행위규제와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함께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예금업무 이외에도 방카슈랑스나 펀드판매 등에 대한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 발생에 대비하여 공동기금의 설치나 금융권 공동의 보험설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핀테크 기술의 진화에 따라 전자금융업법상의 2012여수세계박람회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상화폐가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을 통하여 발생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도록 하거나 전자상거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식이 개발될 경우 국경간 전자상거래에서 환율이나 법정화폐 사용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가상화폐의 이용자 편의성과 함께 이용자 보호 및 관리・감독에 대하여서도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위원회가 'IT・금융융합 지원방안'에서 허용하기로 한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에 따라 향후 관련 인증・보안 기술의 발달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 얼굴 확인에 가까운 인증방식 외에도 개개인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실명확인 기술들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처럼 비대면 실명확인에 있어서 다층적 확인 절차 의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건수가 기하급수적으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비대면 확인 방식으로 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② 영상통화 등을 통해 화상대면을 실시할 수 있고, ③ 현금카드 등을 전달할 때 실명확인을 하고, ④ 기존계좌를 활용하여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한편, ⑤ 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생체정보 활용 등) 내지 ⑥ 타기관 확인결과를 활용하거나 ⑦ 다수의 개인정보를 통한 검증 방식 등을 활용하여 2가지 이상의 방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각각의 단계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개인정보의 관리 소홀 문제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나 관련 핀테크업체들의 개인정보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자나 유출기업에 대한 엄격한 제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외환 송금 · 결제 업무

정부는 외환관리와 관련하여 2015년 7월 1일 국경간 소액 결제 및 송금 · 수취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외환이체업'을 도입하기로 하는 한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외환송금 · 결제 업무를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171]

이러한 외환 관련 규제의 개선을 통하여 외환이체업자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도 해외 송금 ·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체방식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불법자금거래나 사기거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외환이체업자 등록요건 내지 이체한도액을 설정 등의

171) 정부, "그리스발 금융 불안, 한국 경제 영향 제한적", 외환제도 개혁방안 10면 http://www.mosf.go.kr/nw/mosfnw/neslistDetail.do?menuNo=4030000&searchNttId1=OLD_4095153&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3 최종접속일 2015.11.20.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외환이체업자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독과점화에 대한 일정한 대책 수립도 필요할 것이다.

제 5 장 결 론

정부는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15년 1월 27일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을 통하여 기존의 금융업 관련 법제를 유지하면서도 핀테크산업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규제개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존의 금융업 관련 법제를 유지하면서도 현행 핀테크 관련 규제 및 법제에 대하여서는 전지적 사전규제 방식에서 원칙중심의 중간관리·사후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정부가 마련한 핀테크 육성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면서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가 밝히고 있는 ① 금융보안을 토대로 한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 전환, ②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 ③ 핀테크산업 성장 지원, ④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관련 정책은 우리나라에서의 핀테크산업 육성과 활성화에 일정한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기술중립성 원칙을 기반으로 다양한 비대면실명확인 보안·인증 방식 도입에 따라 향후 보안 및 본인인증 관련 핀테크 기술분야에서의 눈부신 발전이 기대된다. 또한, 소액외환이체업자의 도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외환이체 업무 허용에 따라 해외 송금에 대한 이용자의 편의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핀테크산업 육성의 다른 한 축에서는 금융거래에 대한 신뢰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이 균형감 있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시범인가를 예정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 핀테크업체들은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하

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예금자 및 핀테크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과 가상화폐의 현금화 가능성에 대하여서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핀테크기술에 따라 핀테크 관련 금융분쟁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핀테크 관련 금융분쟁해결제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에 관련된 이용자 보호 문제는 시범운영 기간동안 산·관·학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핀테크 발전현황과 규제 사례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바 있다. 이는 중국의 핀테크 발전 상황이나 관련 규제 방식이 한국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규제체계나 법제도를 참고할 만한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이 2015년 7월 마련한 P2P대출 및 온라인소액대출에 대한 규제 방침에서는 ① 계약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② 중개 방식을 권장하며, ③ 불법적인 자금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④ 신용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적극적이고 엄격한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향후 중국의 핀테크업체들이 한-중FTA 체결을 기화로 대거 한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즉, 중국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온라인소액금융(Online Microfinance; 互联网小额贷款)'이 현재까지는 '대부업'으로 분류되어 협력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진출하여 '자금중개업' 등으로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한-중FTA 금융서비스 챕터에서는 결제 및 청산제도에 대한 '대부업'의 접근을 제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중국과의 경제협력

시범사업(Pilot Project) 추진과정에서도 중국의 소액금융업 진출 허용을 배제해 왔다. 그러나, 한-중FTA 제9장 금융서비스 적용범위에는 '자금중개업(Money broking)'과 '...소비자대출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Lending of all types, including consumer credit,...)'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소액금융(소액대출)업도 핀테크의 다른 유형으로 변형되어 적극적으로 진입해 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내에서 P2P대출에 대한 규제 방식을 설계할 때에는 이러한 양자간 협정에 대한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Ⅰ. 국내문헌

김보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과 과제”, 『지급결제와 정보기술』(제33호), 금융결제원, 2008.07.

구본성,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금융연구원, 2008.08.

노형식,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따른 과제와 전망”, 『월간 금융』, 전국은행연합회, 2008.08.

김병태,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의 법률적 과제”, 『상사판례연구』(제22집 제1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09.03.

성태윤・박기영・박단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미 금융 감독체제의 변화”, 한국금융연구원, 2012.

이영종, “거래채널 변화에 따른 우체국예금 시사점”, 우정경영연구소, 2013.06.17.

황나영, “글로벌 금융테크(Fintech)기업 현황 및 은행에 대한 시사점”, 『ISSUE & INSIGHT』(2014-6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14.07.18.

황원경,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WA)의 이해와 도입 효과”, 『KB 지식비타민』(14-59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4.07.30.

이기송, “KB지식비타민 : 국내외 핀테크(fintech) 동향과 전망”,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4.08.04.

LGERI 리포트, “규제 많은 미국이 핀테크를 선도하는 이유”, 2014.12.10.

김유미・황승익・문종진・이영환, “인터넷・모바일 뱅킹과 금산분리”, 한국경제연구원, 2014.12.17.

법무법인 인, “모바일 전자금융거래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정책연구』(14-진흥-49), 미래창조과학부, 2014.12.31.

황나영, “글로벌 금융테크 기업 현황 및 시사점”, 『WFRI 금융경제 포커스』(제11호), 2014.

김종우・박진형・신근호・이선애・최광현, “은행과 인터넷 애널이 함께 본 핀테크”, 『Industry Issue』, IBK투자증권, 2015.01.21.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영국의 테크시티(Tech City)와 핀테크”, 『KB 지식 비타민』(2015-8호), 2015.01.28.

윤종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여신금융연구소, 2015.01.

정유신, “핀테크의 확대추세와 금융투자회사의 대응방안”, 서강대학교 LINC 사업단, 2015.01.

박혜진・이성빈・황석규, “핀테크, 변화의 서막인가? 찻잔 속의 태풍인가?”, 『Industry Issue Report』, 교보증권, 2015.02.04.

민병길, “핀테크 동향과 시사점”, DIGIECO, 2015.02.11.

김미애, “금융과 ICT 기술의 융합을 위한 무(無)규제 원칙 - 금산분리에 가로막힌 핀테크 산업 성장”, 한국경제연구원, 2015.02.23.

김종현, “국내외 핀테크 산업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DIGIECO, 2015.02.25.

장상수, “핀테크가 정보보호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INTERNET & SECURITY FOCUS』,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02.

임석재, “핀테크 보안 동향”, 『TTA Journal』(제158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5.03.04.

정준호・김정숙, “핀테크(FinTech) 서비스의 주요 사례와 보안 이슈”, 『한국멀티미디어학회지』(제19권제1호),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15.03.

하성근, “글로발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혁신 : 핀테크(Fintech)를 중심으로”, 『한국경제포럼』(제7권 제4호), 한국경제학회, 2015.03.

고제헌, “핀테크의 부상 : 비전통적 은행의 등장”, 『HF 이슈 리포트』(15-7호), 한국주택금융공사, 2015.05.

김진완, “[금융과 IT의 융합 핀테크] 핀테크 기업 유치 인프라 구축해 금융중심지를 핀테크 허브로 육성”, 『부산발전포럼』, 부산발전연구원, 2015.05.

배재광, “글로벌 핀테크 산업동향-미국편”, 『Industrial Internet Issue Report』,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05.

한국인터넷진흥원, “Industrial Internet Issue Report - Fintech편”, 『KISA Report』,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핀테크포럼, 2015.05.

KISA, “미국의 핀테크 규제와 발전전략”, 『Industrial Internet Issue Report』, 2015.05.

한국인터넷진흥원, “핀테크 국내외 산업 동향과 전망”, 『해외정책이슈분석』, 2015.06.15.

이성복,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관련 주요쟁점”, 『자본시장 Weekly』(2015-27호), 자본시장연구원, 2015.07.14.

김종현, “핀테크가 국내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KRX MARKET』(2015 여름호), 한국거래소, 2015.07.

서영미, “국내외 P2P대출중개업 관련 규제 동향 및 시사점”, 금융투자협회, 2015.08.05.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핀테크 벤처의 미국 금융업 잠식, 은행과 증권사를 대체”, 『주간기술동향』(1715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09.30.

안수현, “영국의 핀테크관련 산업 육성과 지원방안 개관-금융규제적 관점에서”,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각국의 규제완화 사례 및 시사점 분석』(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5.10.28.

이효경, “일본 핀테크 사업의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의 최근 동향”,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각국의 규제완화 사례 및 시사점 분석』(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5.10.28.

이효경, 『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회의 자료집』 일본 관련 내용, 한국법제연구원, 2015.11.13.

이상제, “일본의 금융그룹규제 변화 모색과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한국금융연구원, 2015.

Ⅱ. 국외문헌

FCA, “A Review of the regulatory regime for crowdfunding and the promotion of non-readily realisable securities by other medi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eb. 2015.

FCA, “FG 15/4: Social Media and Customer Communications, -The FCA’s supervisory approach to financial promotions in social media”, FCA, March 2015.

Ⅲ. 참고자료

-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 -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제4차 회의 보고사항”, 2008.06.26.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실명 확인 이행 여부”, 2008.12.31.

금융감독원,『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매뉴얼』, 2012.0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인터넷 화상대면에 의한 실명확인 가능여부”, 2012.06.25.

금융위원회,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 2013.09.26.

금융위원회, “창조경제 구현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2013.11.27.

미래창조부・중소기업청, ““민간 역량을 활용한 창조경제 성과 조기 가시화 추진” 미래부・중기청『글로벌 엑셀러레이터』본격 육성! - 제7차 창조경제위원회 개최,『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계획』확정”, 미래창조부・중소기업청, 2014.03.07.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 -”, 2014.03.10.

기획재정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 2014.03.27.

금융위원회,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방안”, 2014.06.16.

금융위원회, “IT・금융융합 지원방안 - 제1차 IT・금융융합협의회 운영결과”, 금융위원회, 2015.01.27.

한국경제연구원, “美・日,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금산분리 규제 폐지”, 2015.02.23.

금융위원회,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이제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증권사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2015.05.18.

금융위원회, “제3차 금융개혁회의에서 IT와 금융의 융합에 따른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 방안에 대해 심의・확정”, 2015.05.18.

금융위원회, “빅데이터를 활성화하여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동반성장 토대 구축”, 2015.06.0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IT・금융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2015.06.18.

금융위원회, “(금융위)보도자료_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5.06.25.

기획재정부,『‘외환제도 개혁방안’ Q&A』, 2015.6.29.

금융위원회, “세계최초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인프라(오픈 플랫폼) 구축된다 - 제3차 핀테크 지원센터 Demo day 개최”, 2015.07.15.

미래창조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기업청, “경제혁신 분야 예산 32조원 투입으로 경제 재도약 적극 뒷받침”, 미래창조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기업청, 2015.09.09.

외교부, ‘영사콜센터, 개소 10주년을 맞아 해외 체류 우리국민을 위한 ‘119안전센터’로 탈바꿈’, 외교부홈페이지 - 뉴스 - 보도자료, 2015.10.20.(http://www.mofa.go.kr)

금융보안원, “영국핀테크 시장 및 주요정책현황”, www.fsec.or.kr/Board.do, 2015.11.09.

금융위원회, “서울신문의 “사기꾼 무서워 못합니까” 금융당국 일방 통행에 은행들 골머리”(2015.11.13. 조간)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2015.11.13.

기획재정부, “금융사들, 원화·외화 구별없이 사실상 모든 업무 가능”, 2015.12.10.

금융위원회, “금융개혁 핵심과제 핀테크 : 1년의 변화 - Big 7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 2015.12.

금융위원회, 금융용어사전
http://www.fsc.go.kr/know/wrd_list.jsp?menu=7420000&dn_no=489

- 기 사

NAVER, “2014년 달라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제도”, 2014.01.06. http://privacyblog.naver.com/80204851533

길재식,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395>핀테크(Fintech)”, etnews, http://www.etnews.com/20140915000231, 2014.09.15.

안상욱, “핀테크 발목 잡는 5대 족쇄”, BLOTER, http://www.bloter.net/archives/219809, 2015.02.05.

안상현, “핀테크 싹 틔우려면 3중 규제 풀어야”, BLOTER, http://www.bloter.net/archives/222541, 2015.03.11.

성상훈, ““핀테크?빅데이터 필수”, 금융권서도 시동”, 아이티투데이, http://www.i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236, 2015.03.22.

네이버 인터넷산업연구실, “중국과 미국의 금융환경과 핀테크의 성장”, 『Naver Letter』, NAVER, http://nter.naver.com/naverletter/41460, 2015.03.27.

조계원, “핀테크 지원 협의체 출범, 26개 기관 참여 회의 개최”, 글로벌 이코노믹, http://www.g-enews.com/ko-kr/view.php?ud=20150414111643996342 7_1, 2015.04.14.

이재은, “펀드슈퍼마켓 출범 1주년...절반의 성공”,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23/2015042302308.html, 2015.04.23.

김우람, “[핀테크] ‘주목 e기업’ 액센츄어 핀테크 이노베이션 랩, 될성부른 스타트업 찾아 핀테크 유망주로”, 이투데이, http://news.zum.com/articles/21755215, 2015.05.06.

안상욱, “[K핀테크] 소셜 신용평가로 대출 패러다임 바꾼다”, 블로터, http://www.bloter.net/archives/227641, 2015.05.11.

배재광, “예측 가능한 규제, 혁신서비스 우선 수용”, 『이슈&트렌드』, Techm, http://www.techm.kr/home/bbs/board.php?bo_table=issue&wr_id=392, 2015.05.18.

이상일, “[스페셜 리포트] 크라우드 펀딩, ‘핀테크 관심주’로 뜬다”, 디지털데일리,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32100, 2015.07.08.

김진형, “‘은행법 개정 불확실’, 인터넷은행 시범인가로 몰린다.”,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72815070147906, 2015.07.29.

손성은, “신용정보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업계 ‘술렁’”, 보험매일,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369, 2015.09.08.

길재식, “K-핀테크 이노베이션 랩을 만들자”, etnews, http://www.etnews.com/20150903000403, 2015.09.21.

유병연, “금융 vs IT : 융합없는 핀테크 정책”, 한국기자협회,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7431, 2015.09.23.

국민정, “핀테크, 자산관리도 온라인 시대”, 조세금융신문,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17810, 2015.09.25.

박성필, “증권업계에 부는 핀테크 열풍”, 머니위크,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no=2015101520038028147, 2015.10.18.

박소라,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분석 ‘핀테크 신비즈니스’로 뜬다”, 전자신문, www.etnews.com/20151026000294, 2015.10.26.

장대한, “英 핀테크 산업 급성장의 요인은?”, KOTRA, http://www.globalwindow.org, 2015.11.06.

손경호, “핀테크 시대, 은행 모바일뱅킹도 변해야 산다”, ZDNet Korea,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51116182248 &type=det&re=, 2015.11.17.

김남희・최진홍, “[인터넷은행의 성공조건] 카카오 ‘플랫폼’, K뱅크 ‘인프라’, I뱅크 ‘시너지’ 격돌”, 이코노믹리뷰,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000, 2015.11.19.

홍창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11월 말 오픈”,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511221820252709, 2015.11.22.

김동석, “[대담] 김주하 NH농협은행장 ”34년 은행 외길, 핀테크의 또다른 말은 어깨동무”,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51124000453, 2015.11.24.

Fintech Innovation Lab, http://www.fintechinnovationlab.com/

Partnership for New York City Partnership Fund,
http://pfnyc.org/our-investments/

Fintech Innovation Lab - Asia-Pacific,
http://www.fintechinnovationlabapac.com/about/partnerships.aspx)

Financial-ombudsman, http://www.financial-ombudsman.org.uk/

e-나라지표 - 부분별지표 - ICT발전지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44